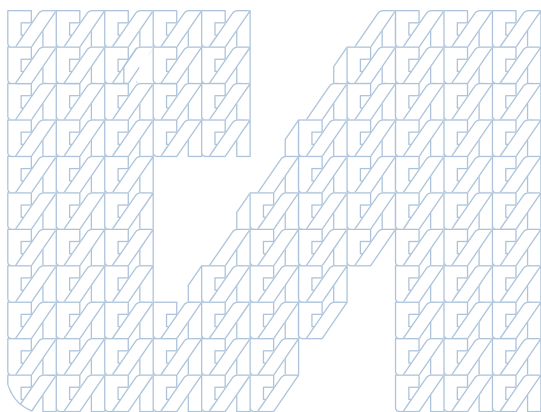


세종시의 세외수입 효율 현실화 방안 연구

김 흥 주



정책연구 2019-55

세종시의 세외수입 효율 현실화 방안 연구

김 흥 주

연구책임

• 김흥주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자문

• 곽임근 / 세종연구실 정책협력관

연구지원

• 김민영 / 세종연구실 위촉연구원

정책연구 2019-55

세종시의 세외수입 효율 현실화 방안 연구

발행인 박 재 목

발행일 2019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신화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0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처 나은인쇄문화사(전화:042-252-410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증가하는 재정수요와 그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사용자부담금(user charges)으로 논의되는 세외수입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에게 편익을 기준으로 한 공공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확보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음
- 요율의 현실화가 사용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행정 처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외수입 요율은 지방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 이에 적절한 세외수입 요율 현실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본 연구는 세종시의 자체재원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확충의 중요성을 인지해 2018년도에 기 수행된 연구에 이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요율 적정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2차 연구 수행). 이를 위해 현황조사, 원가분석이 가능하고 그 의미가 있는 세목을 대상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해 세입확충을 위한 증거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연구목적 및 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전국, 세종시의 세외수입 현황과 실태 파악, 그에 따른 세외수입 원가분석 정보를 확인하는데 있음
 - 특히, 2018년 정책과제로 제안되었던 세외수입 요율분석(14개 세외수입 항목)에서 누락된 세외수입 현황의 파악을 통해 추가적인 원가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됨
- 둘째, 낮은 요율이 세외수입 요율 산정방식의 불합한 부분에 기인한다면 요율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원가분석이 가능한 세외수입의 현행 효율적정성을 파악해 향후 재원확충을 위한 기초자료(조례 제·개정)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본 연구의 주요 내용: 세외수입 현황분석 및 문제점 검토, 세외수입(사용료)에 대한 원가분석 및 효율분석, 결론 및 정책적 제언으로 구성됨

■ 연구의 방법

- 세외수입에 관한 이론적 검토, 선행연구 검토 등 문헌조사, 세외수입 현황에 관한 자료조사
 - 전국 단위의 세외수입 규모(단체별 구성, 지방세와 비교, 회계별 세외수입) 및 현황분석
 - 세종시의 세외수입 규모(전체 및 회계별 징수실적) 및 현황분석, 세외수입의 문제점 검토
 - 세종시의 세외수입 사용료 현황분석
- 세외수입(사용료)에 대한 원가분석, 효율분석
 - 세외수입 항목별 원가계산 대상선정(1차, 2차 검토)
 - 세외수입 항목별 원가분석을 통한 효율분석/ 실제 세외수입 효율과 비교 분석을 통한 적정원가 검토
 - 타 자치단체의 사용료 요금 현황분석 및 비교
- 세외수입 항목 산정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검토

■ 연구결과

- 본 연구는 세외수입 자료를 3차에 걸쳐 검토한 후 분석이 가능한 5개의 세외수입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사용료를 중심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였음
- 사용료의 원가분석을 위해 각 세외수입 담당부서로부터 결산자료 등을 받아 운영경비를 산출하였으며 토지가격, 자산취득비, 전출가격에 관한 자료 협조를 통해 자본비용과 감가상각비를 산출하여 원가를 도출함.

그리고 해당연도 세외수입 항목 당 총 수입금과 원가를 비교해 요율을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조사를 통해 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함

- 사용료 등의 원가보상율을 파악하기 위해 각 세외수입 사용료에 수입금 대비 원가를 비교(수입금÷원가×100)해 계산하였음. 그리고 분석결과 장애인 콜택시 사용료, 전의생활체육공원(축구장) 사용료 등의 원가보상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요금현실화 1=수입금÷원가(운영비용)×100
 - 요금현실화 2=수입금÷원가(시설원가<운영비용+감가상각비+자본비용>)×100
- 원가보상율이 낮은 세외수입(약 10%내·외의 요율)의 경우 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해 사용료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적정화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임

[세종시의 세외수입 요금 원가보상율]

사용료 종류	요금현실화율 1(%)	요금현실화율 2(%)
공영주차장 사용료 (전통시장+주차타워)	45.92	26.54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	26.25	20.29
조치원 주차타워(주차장) 사용료	60.36	29.43
장애인 콜택시 사용료	6.55	6.33
공영자전거 사용료	59.57	54.81
전의생활체육공원(축구장) 사용료	18.86	5.07

- 다음은 7명의 재정전문가, 2명의 세외수입 담당 공직자를 대상으로 5 (공영주차장은 통합 되어 1개 추가)개의 세외수입 항목에 대해 공공성, 경제성, 편익성, 배제성, 가능성, 기여, 그리고 시장정보 등 8가지의 부과기준을 근거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 그리고 부과기준 항목에 동의 (○ 표기, 반대 × 표기)가 과반이 넘는 경우 주운현(2005)의 연구에서 제시한 항목별 가중치 값을 적용해 적정율을 검토함

[원가보상 적정요율 산정 요약]

세외수입 항목	적정요율(%)	요금현실화율 1(%)	요금현실화율 2(%)
공영주차장 사용료 (전통시장+주차타워)	-	45.92	26.54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	69.29	26.25	20.29
조치원 주차타워(주차장) 사용료	69.29	60.36	29.43
장애인 콜택시 사용료	63.43	6.55	6.33
공영자전거 사용료	63.43	59.57	54.81
전의생활체육공원(축구장) 사용료	69.29	18.86	5.07

■ 정책제언

원가분석을 위한 회계 및 정보관리, 조직확충

- 세종시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세외수입 요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현황 파악과 함께 원가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복합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경우 회계와 원가가 연동되지 못해 원가분석을 통한 요율분석은 그 한계가 있음
- 제도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원가분석을 하도록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세외수입의 요율분석과 이를 통한 세외수입확충을 위해서 원가와 회계가 분리되지 않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더불어 원가분석을 위한 정확한 자료 뿐 아니라 정보관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임. 현재 운영원가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세종시는 전체시설을 통합한 계정을 관리하는데 그 한계가 있음. 이에 수입·지출항목의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직영으로 운영되는 경우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해 원가정보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임

적정요율 산정을 위한 기준 제시 검토

- 적정한 요율을 부과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검토해야 할 것은 합리적인 결정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을 것임. 즉, 사용료 등에 대한 원가분석 이후 이 결과를 통해 적정의 요율을 검토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항목은 각기 공공성, 시장성, 편익성 등 고유의 특수성이 있기에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따라서 일괄적으로 하나의 요율을 정하기보다 그 특성에 맞는 원가보상율을 검토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함

요율 현실화를 위한 정기적 검토 및 홍보 노력

- 현재 사용료의 원가가 실제 받는 요금과 비교해 그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날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요율의 적정성 검토를 주기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임(주만수 외, 2015; 김홍주, 2018)
- 그리고 사용료 요금이 원가대비 비현실적으로 낮아 요율을 현실화 시키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당위성 인식, 그리고 사용자의 순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다시 말하면, 세외수입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 원가현실화 적용 등 궁극적으로 주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취지를 홍보해야할 것으로 사료 됨(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한 이해 증진)

관련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

-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입을 증대,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함
- 그리고 둘째, 세외수입의 적정요율 도출, 이를 근거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관련전문가, 담당공무원, 회계사 등이 함께 공동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 적정 요금에 대한 심의 등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복잡·다양한 상위법규에 의해 분산된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단순화 해 나가야 할 것임

- 세외수입과 관련된 법규는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개별조례로 정해 징수하게 되므로 체계적 관리의 한계에 직면, 이에 각기 사용료 요율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규정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부과 목적, 근거, 방법, 시기, 기준 등에 대한 개별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방식 등)

□ **세외수입 발굴을 위한 지속적 노력**

- 원가분석을 통해 실제 요율이 어떤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사용료를 높일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실제 지역주민, 사용자의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접근할 상황은 아닐 것임
- 이에 스포츠, 레저, 예술, 문화 등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세외수입을 발굴해 나가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임. 그러나 전제는 특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부과방식, 지속가능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임

차 례

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3. 선행연구 검토	4
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6
1. 연구의 방법	6
2. 주요내용	6
2장 세외수입 현황 분석	9
1절 우리나라의 세외수입 규모	11
1. 세외수입 단체별 구성	11
2.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비교, 회계별 세외수입	12
2절 세종시의 세외수입 현황 및 문제점	19
1. 세종시의 세외수입 규모	19
2. 세외수입의 문제점	25
3. 세종시의 사용자 현황 검토	27
3장 세종시의 세외수입 요율 분석	33
1절 원가계산 대상과 기본가정	35
1. 원가개념 및 원가계산	35
2. 원가계산의 대상 및 기본가정	38
2절 세외수입(공공시설 사용자) 원가분석	42
1. 주차장 원가분석 결과	42
2. 체육시설 및 공영자전거 원가분석 결과	48
3. 장애인 콜택시 원가분석 결과	52

4. 공공시설 사용료 요율분석	54
5. 자치단체별 사용료 수입 관련 조례 비교	55
3절 세외수입 적정 요율산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63
1. 조사방법	63
2. 적정요율 산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분석결과	65
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67
1절 연구결과의 종합	69
2절 정책적 제언	72
참고문헌	75
부록 1: 전문가 조사 설문지	76

표 차례

[표 2-1] 세외수입 단체별 구성비	11
[표 2-2] 세외수입과 지방세 규모	13
[표 2-3] 회계별 세외수입 신장추세	14
[표 2-4] 회계별 세외수입 규모	14
[표 2-5] 시·도별 회계별 징수규모	18
[표 2-6] 2017년 세종시의 세외수입 징수실적	19
[표 2-7] 2017년 기준 세종시 전년도 대비 징수액	20
[표 2-8] 2017년 세종시의 항목별 징수실적	21
[표 2-9]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실적(일반회계)	22
[표 2-10]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실적(특별회계(기타))	23
[표 2-11]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실적(일반회계)	24
[표 2-12]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실적(특별회계(기타))	24
[표 2-13] 해당 부서별 사용료 조사 결과	27
[표 2-14] 세외수입 사용료 현황	28
[표 3-1] 원가계산 방식의 비교	37
[표 3-2] 세종시의 원가분석 세외수입 항목	38
[표 3-3]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40
[표 3-4]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 운영비	42
[표 3-5]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 감가상각비	43
[표 3-6]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 자본비	43
[표 3-7]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 시설원가	43
[표 3-8]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 기준단위	44
[표 3-9]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 기준단위당 원가	44
[표 3-10]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비	44
[표 3-11] 전통시장 주차장 감가상각비	44
[표 3-12] 전통시장 주차장 자본비	45

[표 3-13]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원가	45
[표 3-14] 전통시장 주차장 기준단위	45
[표 3-15] 전통시장 주차장 기준단위당 원가	46
[표 3-16] 주차타워 주차장 운영비	46
[표 3-17] 주차타워 주차장 감가상각비	46
[표 3-18] 주차타워 주차장 자본비	47
[표 3-19] 주차타워 주차장 시설원가	47
[표 3-20] 주차타워 주차장 기준단위	47
[표 3-21] 주차타워 주차장 기준단위당 원가	47
[표 3-22] 체육공원 축구장 운영비	48
[표 3-23] 체육공원 축구장 감가상각비	48
[표 3-24] 체육공원 축구장 자본비	48
[표 3-25] 체육공원 축구장 시설원가	49
[표 3-26] 체육공원 축구장 기준단위	49
[표 3-27] 체육공원 축구장 기준단위당 원가	49
[표 3-28] 공영자전거 운영비	50
[표 3-29] 공영자전거 감가상각비	50
[표 3-30] 공영자전거 자본비	50
[표 3-31] 공영자전거 시설원가	51
[표 3-32] 공영자전거 기준단위	51
[표 3-33] 공영자전거 기준단위당 원가	51
[표 3-34]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52
[표 3-35] 장애인 콜택시 감가상각비	52
[표 3-36] 장애인 콜택시 시설원가	53
[표 3-37] 장애인 콜택시 기준단위	53
[표 3-38] 장애인 콜택시 기준단위당 원가	53
[표 3-39] 세종시의 세외수입 요금 원가보상율	54
[표 3-40] 세종 및 세종인접지역 공영자전거 기본 사용료	55
[표 3-41] 세종 및 세종인접지역 공원사용료	55
[표 3-42] 세종 및 세종인접지역 목욕탕 사용료	56

[표 3-43] 세종 및 세종인접지역 장례식장, 봉안당, 화장장 사용료	57
[표 3-44] 세종 및 세종인접지역 주차장·부설주차장 사용료	58
[표 3-45] 세종 및 세종인접지역 장애인 콜택시 사용료	59
[표 3-46] 세종 및 세종인접지역 체육시설 사용료	60
[표 3-47] 요율 산정을 위한 8가지 기준	63
[표 3-48] 세외수입 요율부과 기준 채택여부에 따른 우선순위와 가중치 ..	64
[표 3-49] 전문가 조사 참여자	64
[표 3-50] 원가보상 적정요율 산정	66
[표 4-1] 세종시의 세외수입 요금 원가보상율	70
[표 4-2] 원가보상 적정요율 산정 요약	71

그림 차례

[그림 2-1] 2017년 세외수입 단체별 구성비	12
[그림 2-2] 2017년 세외수입과 지방세 규모	13
[그림 2-3] 2017년 회계별 세외수입 징수규모 및 증감률	15
[그림 2-4] 2017년 경상적 세외수입 규모	16
[그림 2-5] 2017년 임시적 세외수입 규모	17
[그림 2-6] 시·도별 징수규모	18
[그림 3-1] 원가의 구성	36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장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증가하는 재정수요와 그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세수를 늘리는 것이 실효성 있을 것이나 이는 법적·환경적 요인에 의한 제약이 크기 때문에 지방세외수입의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특히, 사용자부담금(user charges)으로 논의되는 세외수입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에게 편익을 기준으로 한 공공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확보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외수입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율현실화에 관한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못했음. 이는 지방예산에서 적은 비중, 효율 현실화를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파악, 원가정보 파악의 어려움에 기인할 것임
- 효율현실화가 사용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행정처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외수입 효율은 지방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 이에 적절한 세외수입 효율 현실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세종시는 2018년 기준 세외수입의 현황을 파악 하였고, 그리고 14개 세목(사용료·수수료)에 대한 공공시설 및 서비스 사용료, 수수료 등의 원가분석을 실시해 효율적정성을 검토한 바 있음 (2차 연구 성격 임)
- 이에 본 연구는 세종시의 자체재원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확충의

중요성을 인지해 2018년도에 기 수행된 연구에 이어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효율 적정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이를 위해 현황조사, 원가분석이 가능하고 그 의미가 있는 세목을 대상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해 세입확충을 위한 증거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목적은 첫째, 전국, 세종시의 세외수입 현황과 실태 파악, 그에 따른 세외수입 원가분석 정보를 확인하는데 있음
 - 특히, 2018년 정책과제로 제안되었던 세외수입 효율분석(14개 세외수입항목)에서 누락된 세외수입 현황의 파악을 통해 추가적인 원가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됨
- 둘째, 낮은 효율이 세외수입 효율 산정방식의 불합한 부분에 기인한다면 효율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원가분석이 가능한 세외수입의 현행 효율적정성을 파악해 향후 재원확충을 위한 기초자료(조례 제·개정)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3. 선행연구 검토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원확충을 위하여 사용자부담금(user charges)의 성격을 가진 세외수입(특히, 경상 세외수입)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현실임
- 이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실무행정상의 합리적 개선, 법적 제도적 개선(체납처분 절차 등), 세외수입의 현황과 과제, 각종 사용자·수수료의 원가분석과 함께 효율의 현실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 그 중에서 이세구(2004), 김종순·주운현(2005) 주운현(2005; 2006; 2008), 고승희(2011), 고승희 외(2015), 고승희·주운현(2016), 조임곤(2016),

김흥주(2018)의 연구를 중심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 현실화 방안의 연구를 수행함

- 특히, 김흥주(2018)는 세종시의 세외수입 14개 세외수입 항목에 대한 원가분석, 그에 따른 요율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한 바 있음
- 세종시는 추가적인 세외수입 항목의 요율 적정성 검토의 중요성을 인지해 더 많은 세외수입 항목의 원가분석 등을 통해 비현실적인 세외수입 항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함
- 이에 본 연구는 세종시의 정책수요에 대응한 연구의 수행으로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함

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방법

- 전국 및 세종시의 세외수입 현황에 관한 자료조사
 - 전국 단위의 세외수입 규모(단체별 구성, 지방세와 비교, 회계별 세외수입) 및 현황분석
 - 세종시의 세외수입 규모(전체 및 회계별 징수실적) 및 현황분석, 세외수입의 문제점 검토
 - 세종시의 세외수입 사용료 현황분석
- 세외수입(사용료)에 대한 원가분석, 요율분석
 - 사용료수입 항목별 원가계산 대상을 선정함(1차 기초자료조사, 2차 원가분석을 위한 자료조사, 3차 최종 검토)
 - 세외수입규모와 원가분석의 비교를 통한 요율분석
 - 타 자치단체의 사용료 요금 현황분석 및 비교
- 세외수입(사용료 수입) 항목 산정기준(적정원가 검토를 위한)에 대한 전문가 조사 실시(학자 및 공직자)

2. 주요내용

- 본 보고서는 1장 서론, 2장 세외수입 현황분석, 3장 세종시의 세외수입 요율 분석, 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으로 구성됨
-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선행연구 검토, 연구의 방법 및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함
- 2장은 세외수입 현황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함
 - 우리나라의 세외수입 규모(단체별 구성, 지방세와 비교, 회계별 세외수입 규모) 및 현황분석, 세종시의 세외수입 규모(전체 및 회계별 징수

실적) 및 현황분석, 세외수입의 문제점 검토

- 3장은 세외수입(사용료)에 대한 원가분석 및 효율 분석
 - 세종시 사용료수입 원가계산 대상을 3차의 검토를 통해 선정, 선정된 사용료 수입에 대한 원가분석 및 효율 분석, 전문가 조사를 통한 사용료 수입 항목 적정원가 검토
- 4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연구의 요약 및 향후 세외수입 효율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음

세외수입 현황 분석

제1절 우리나라의 세외수입 규모

제2절 세종시의 세외수입 현황 및 문제점

2장 세외수입 현황 분석

1절 우리나라의 세외수입 규모

1. 세외수입 단체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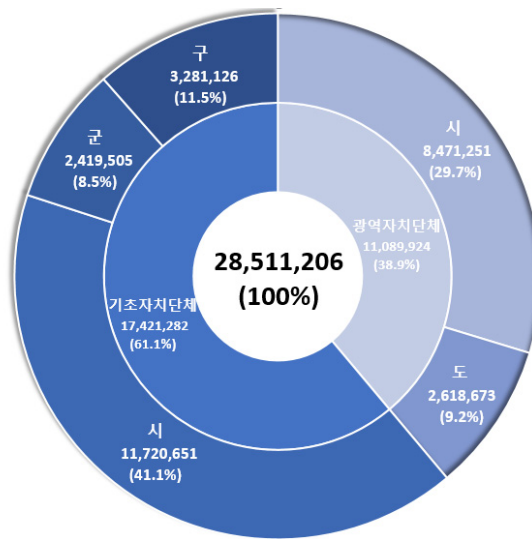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세외수입 규모는 2008년 67,947,818백만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009년(72,906,399백만 원), 2010년(59,877,959백만 원)에 각기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58,330,065백만 원 → 72,607,629백만 원). 그러나 2014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7년에 28,511,206백만 원으로 집계됨
- 2017년 세외수입 규모를 2013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 그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표 2-1] 세외수입 단체별 구성비(단위: 백만 원, %)

연도	단체별 구성비	총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	도	시	군	구
2008	징수액	67,947,818	17,106,170	8,910,550	24,822,284	10,881,270	6,227,544
	구성비	100.0	25.2	13.1	36.5	16.0	9.2
2009	징수액	72,906,399	17,823,208	8,541,391	26,626,722	12,555,120	7,359,958
	구성비	100.0	24.5	11.7	36.5	17.2	10.1
2010	징수액	59,877,959	15,542,957	8,099,894	20,898,470	9,062,702	6,273,936
	구성비	100.0	26.0	13.5	34.9	15.1	10.5
2011	징수액	58,330,065	15,378,654	8,912,464	19,909,478	8,789,659	5,339,810
	구성비	100.0	26.4	15.3	34.1	15.1	9.1
2012	징수액	66,180,254	17,644,666	10,117,804	23,063,817	9,527,944	5,826,023
	구성비	100.0	26.7	15.3	34.8	14.4	8.8
2013	징수액	72,607,629	20,146,108	10,782,522	24,850,383	10,895,980	5,932,636
	구성비	100.0	27.7	14.9	34.2	15.0	8.2
2014	징수액	23,378,364	7,460,012	2,690,698	8,758,668	1,954,109	2,514,877
	구성비	100.0	31.9	11.5	37.5	8.3	10.8
2015	징수액	26,563,012	7,879,567	2,636,585	11,067,876	2,370,381	2,608,611
	구성비	100.0	29.7	9.9	41.7	8.9	9.8
2016	징수액	28,689,573	8,624,998	2,785,303	11,763,037	2,526,374	2,989,860
	구성비	100.0	30.1	9.7	41.0	8.8	10.4
2017	징수액	28,511,206	8,471,251	2,618,673	11,720,651	2,419,505	3,281,126
	구성비	100.0	29.7	9.2	41.1	8.5	11.5

자료: 행정안전부(2018). 「2018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다음 [그림 2-1]에서 보면 세외수입의 비중은 광역자치단체가 38.9%, 기초자치단체가 61.1% 비율을 차지함. 그리고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시·도, 시·군·구별 자치단체를 살펴볼 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단체는 기초시가 41.1%, 광역시가 29.7%, 구가 11.5%가 광역도가 9.2%, 군이 8.5%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 2017년 세외수입 단체별 구성비(단위: 백만 원)

2.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비교, 회계별 세외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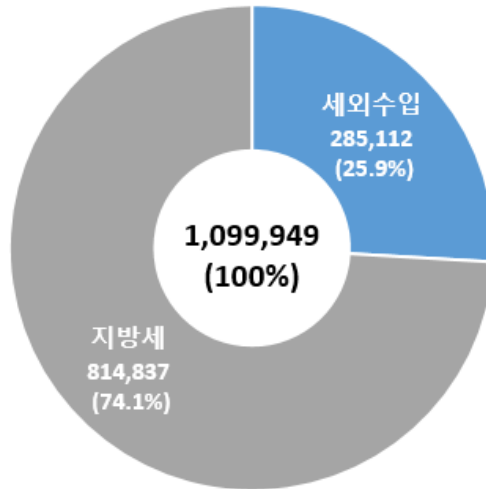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3년 까지 세외수입의 규모가 지방세의 규모와 비교해 그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가(2013년 기준 세외수입 비중이 57.4%), 2014년 이후 2017년 (25.9%)까지 그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든 특징을 보임
 - 2017년 기준 지방세 비율이 74.1%로 현격히 늘어남

[표 2-2] 세외수입과 지방세 규모(단위: 억 원)

세입별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비율%)	1,106,287 (100)	1,201,182 (100)	1,263,865 (100)	851,034 (100)	975,409 (100)	1,042,212 (100)	1,099,949 (100)
세외수입 (비율%)	583,301 (52.7)	661,802 (55.1)	726,076 (57.4)	233,784 (27.5)	265,631 (27.2)	286,895 (27.5)	285,112 (25.9)
지방세 (비율%)	522,986 (47.3)	539,380 (44.9)	537,789 (42.6)	617,250 (72.5)	709,778 (72.8)	755,317 (72.5)	814,837 (74.1)

자료: 행정안전부(2018). 「2018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다음 [그림 2-2]는 2017년 기준 세외수입과 지방세수의 규모와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2-2] 2017년 세외수입과 지방세 규모(단위: 억 원)

- 다음 [표 2-3]은 회계별 세외수입의 신장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특기할 만 한 것은 2014년에 세외수입의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는데(2013년 726,076억 원 → 2014년 233,783억 원 → 2017년 285,112억 원), 이는 일반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규모가 크게 감소한데 기인하였음
-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함께 특별회계 수입 역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음

[표 2-3] 회계별 세외수입 신장추세(단위: 억 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583,301	661,803	726,076	233,783	265,630	286,895	285,112	
일반 회계	소 계	282,350	336,606	386,961	108,221	115,127	127,149	131,058
	경상적 수입	43,985	47,120	50,358	49,366	53,093	57,173	60,651
	임시적 수입	238,365	289,486	336,603	58,855	62,034	69,976	70,407
특별회계	300,951	325,197	339,115	125,562	150,503	159,746	154,055	

자료: 행정안전부(2018). 「2018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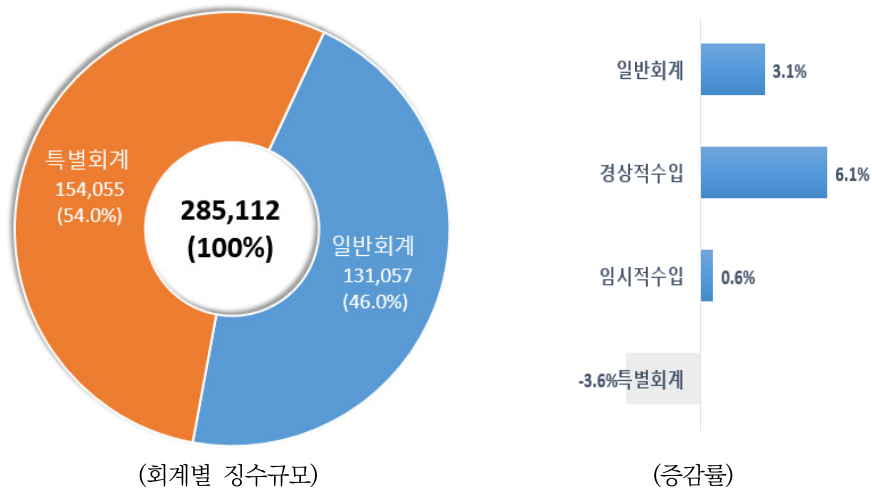
- 다음 [표 2-4]는 회계별 세외수입 규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6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회계는 일반회계에서 경상적 수입이 6.1%를 보이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임시적 수입이 5.6%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이에 반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는 세목은 기타특별회계의 경상적 수입이 -10.6%로 나타남

[표 2-4] 회계별 세외수입 규모(단위: 억 원, %)

구 분	2016 징수액	2017 징수액	증감률		
계	286,895	285,112	-0.6		
일반 회계	소 계	127,149	131,058	3.1	
	경상적 수입	57,173	60,651	6.1	
	임시적 수입	69,976	70,407	0.6	
특별 회계	소 계	159,746	154,055	-3.6	
	기타특별회계	경상적 수입	31,335	28,023	-10.6
		임시적 수입	34,442	36,362	5.6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수입	77,408	73,879	-4.6
		사업외수입	16,561	15,791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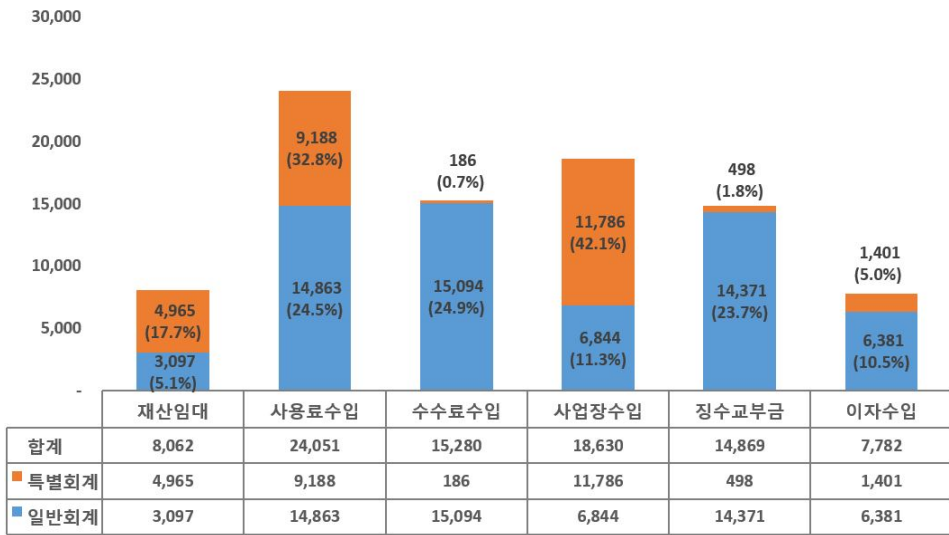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2018). 「2018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다음 [그림 2-3]의 2017년 기준 회계별 징수금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비율이 46.0%, 특별회계는 54.0%로 특별회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6.1%로 나타남
- 2014년 이후 임시적 세외수입, 특별회계의 규모 급감으로 세외수입의 큰 증가폭을 발견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음



[그림 2-3] 2017년 회계별 세외수입 징수규모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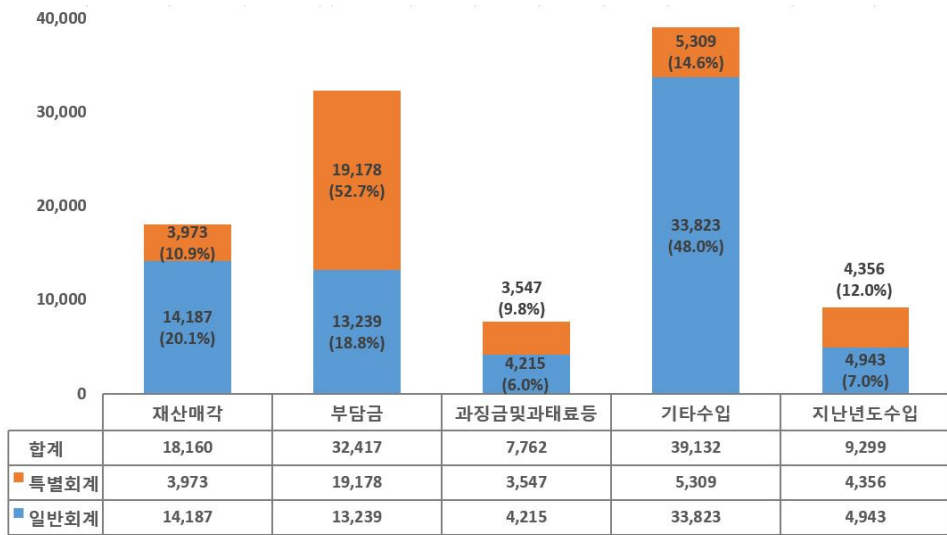
- 2017년 기준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규모를 살펴보면 사용료수입의 규모가 24,051억 원으로 전체의 약 27.1%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사업장 수입이 18,630억 원으로 21.0%, 수수료수입이 15,280억 원으로 17.2%, 징수교부금수입이 14,869억 원으로 16.8%, 재산임대수입이 8,062억 원으로 9.1%, 이자수입이 7,782억 원으로 8.8%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회계의 경우 수수료수입이 15,094억 원인 2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사용료수입이 14,863억 원으로 24.5%, 징수교부금 14,371억 원으로 23.7%, 사업장수입 6,844억 원으로 11.3%, 이자수입 6,381억 원으로 10.5%, 재산임대 수입이 3,097억 원으로 5.1%의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장수입이 11,786억 원으로 그 비중이 42.1%에 달하며 그 뒤를 이어 사용료수입이 9,188억 원으로 32.8%, 재산임대수입이 4,965억 원으로 17.7%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 2017년 경상적 세외수입 규모(단위: 억 원, %)

자료: 행정안전부(2018). 「2018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2017년 기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타수입이 39,132억 원으로 전체의 약 36.7%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부담금이 32,417억 원으로 30.4%, 재산매각 18,160억 원으로 17.0%, 지난해도 수입이 9,299억 원으로 8.7%, 과징금 및 과태료가 7,762억 원으로 7.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의 경우 기타수입이 33,823억 원인 4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재산매각이 14,187억 원으로 20.1%, 부담금이 13,239억 원으로 18.8%의 비중으로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특별회계의 경우 부담금이 19,178억 원으로 그 비중이 52.7%에 달하며 기타수입이 5,309억 원으로 14.6%, 재산매각이 3,973억 원으로 10.9%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 2017년 임시적 세외수입 규모(단위: 억 원, %)

자료: 행정안전부(2018). 「2018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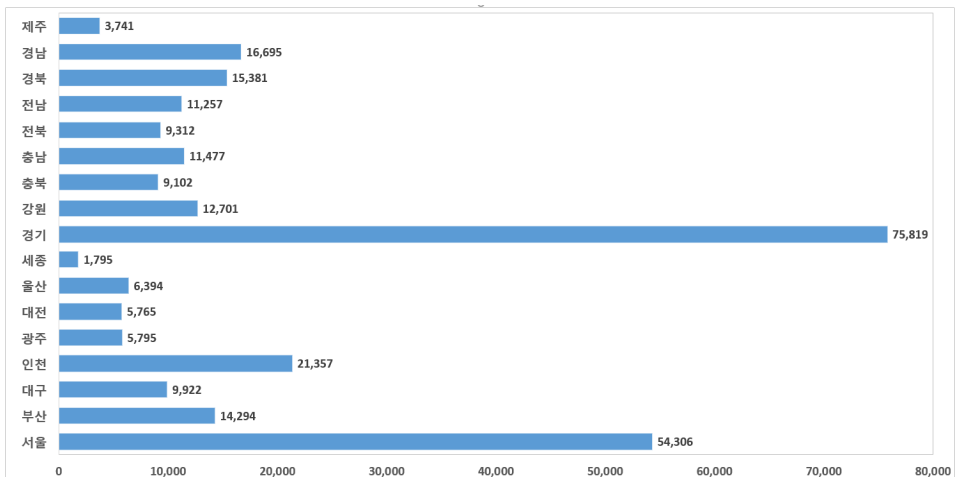
- 다음 [표 2-5]는 시·도별, 회계별 징수규모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경기도가 2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이 19.0%, 인천 7.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가 75,8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이며 각기 일반회계 30,456억 원, 특별회계(기타) 16,954억 원, 특별회계(공기업) 28,409억 원으로 나타남
- 이중 세종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가 1,795억 원, 일반회계 410억 원, 기타특별회계 34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036억 원으로 그 구성비가 0.6%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서 가장 낮은 비율임

[표 2-5] 시·도별 회계별 징수규모(단위: 억 원, %)

구 분	합 계	구성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공기업
합 계	285,113	100.0	131,058	64,385	89,670
서울	54,306	19.0	23,841	23,577	6,888
부산	14,294	5.0	5,902	2,451	5,942
대구	9,922	3.5	5,902	2,451	5,942
인천	21,357	7.5	9,147	3,898	8,313
광주	5,795	2.0	2,815	11	2,130
대전	5,765	2.0	2,824	882	2,059
울산	6,394	2.2	3,075	842	2,477
세종	1,795	0.6	410	349	1,036
경기	75,819	26.6	30,456	16,954	28,409
강원	12,701	4.5	7,813	1,276	3,613
충북	9,102	3.2	5,011	1,257	2,834
충남	11,477	4.0	5,638	1,721	4,118
전북	9,312	3.3	4,784	1,104	3,424
전남	11,257	3.9	6,798	2,123	2,336
경북	15,381	5.4	7,845	2,779	4,756
경남	16,695	5.9	7,738	2,974	5,983
제주	3,741	1.3	1,791	423	1,527

자료: 행정안전부(2018). 「2018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다음 [그림 2-6]은 시·도별로 일반회계+특별회계의 합인 총 세외수입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2-6] 시·도별 징수규모

2절 세종시의 세외수입 현황 및 문제점

1. 세종시의 세외수입 규모

1) 세외수입 징수실적

- 다음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종시의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징수결정액은 총 189,946백만 원이며 실제 징수액은 179,483백만 원으로 나타남. 그리고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이 48,342백만 원에 징수액은 40,947백만 원으로,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41,603백만 원, 징수액은 138,536백만 원으로 나타남. 따라서 징수율은 전체 94.5%, 일반회계 84.7%, 특별회계 97.8%로 나타남

[표 2-6] 2017년 세종시의 세외수입 징수실적(단위: 백만 원)

	최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징수율		
						(C/A)	(C/B)	
전체	169,973	189,946	179,483	121	10,342	105.6	94.5	
일반회계	34,634	48,342	40,947	121	7,274	118.2	84.7	
특별회계	계	135,338	141,603	138,536	-	3,067	102.4	97.8
	기타	37,898	35,176	34,936	-	240	92.2	99.3
	공기업	97,440	106,427	103,600	-	2,827	106.3	97.3

자료: 행정안전부(2018). 「2018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다음 [표 2-7]은 회계별(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년도 대비 징수액을 보여주는 결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는 세목은 일반회계의 임시적 수입에서 부담금이 205.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일반회계 임시적 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79.3%, 과징금 및 과태료가 59.1%, 일반회계의 경상적 수입 중 사용료수입, 재산임대수입이 각각 48.3%, 48.1%의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세외수입의 감소율이 가장 큰 세목은 특별회계(공기업)에서 사업외수입이 -45.0%, 그리고 일반회계 경상적 수입에서 이자수입 -

42.6%, 특별회계(기타) 임시적 수입에서 기타수입이 -40.8%로 전년대비 큰 폭의 감소를 보였음

[표 2-7] 2017년 기준 세종시 전년도 대비 징수액(단위: 백만 원, %)

구분	2017, 2016년 징수액 대비					
	2017 징수액(A)		2016 징수액(B)		증감액	증감률
회계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C=A-B)	(C/B)
총계	179,484	100	185,208	100	-5,724	-3.1
일반회계	40,949	100	36,246	100	4,703	13
소계	22,496	100	21,768	100	728	3.3
경상적수입	955	4.2	645	3	310	48.1
자산임대 수입	8,901	39.6	6,002	27.6	2,899	48.3
사용료 수입	6,006	26.7	4,866	22.4	1,140	23.4
사업 수입	1,193	5.3	1,420	6.5	-227	-16
징수교부금 수입	627	2.8	441	2	186	42.2
이자 수입	4,814	21.4	8,394	38.6	-3,580	-42.6
소계	18,453	100	14,478	100	3,975	27.5
임시적수입	651	3.5	363	2.5	288	79.3
부담금	3,518	19.1	1,152	8	2,366	205.4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274	12.3	1,429	9.9	845	59.1
기타 수입	10,727	58.1	10,521	72.7	206	2
지난 년도 수입	1,283	7	1,013	7	270	26.7
특별회계	138,535	100	148,962	100	-10,427	-7
특별회계(기타)	34,936	100	44,988	100	-10,052	-22.3
소계	18,936	100	21,593	100	-2,657	-12.3
경상적수입	1,193	10.5	1,167	7.7	326	19.6
자산임대 수입	-	0	-	0	0	0
사용료 수입	-	0	-	0	0	0
수수료 수입	16,030	84.7	19,062	88.3	-3,032	-15.9
사업 수입	-	0	-	0	0	0
징수교부금 수입	913	4.8	864	4	49	5.7
소계	16,00	100	23,395	100	-7,395	-31.6
임시적수입	-	0	-	0	0	0
부담금	14,277	89.2	21,562	92.2	-7,285	-33.8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192	7.5	1,271	5.4	-79	-6.2
기타 수입	61	0.4	103	0.4	-42	-40.8
지난 년도 수입	470	2.9	459	2	11	2.4
특별회계(공기업)	103,599	100	103,974	100	-375	-0.4
사업수입	89,791	86.7	78,853	75.8	10,938	13.9
사업외수입	13,808	13.3	25,121	24.2	-11,313	-45

자료: 행정안전부(2018). 「2018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2) 세외수입 항목별 징수실적

- 2017년 기준 세종시의 세외수입 항목별 징수실적은 전체 179,484백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40,949백만 원, 특별회계(기타)가 34,936백만 원, 특별회계(공기업)가 103,599백만 원으로 나타남
- 일반회계는 경상적 수입이 22,496백만 원, 임시적 수입이 18,453백만 원으로 나타남
 - 이중 징수규모가 가장 큰 세목은 사용료수입이 8,901백만 원이며, 수수료 수입 6,006백만 원, 이자수입 4,814백만 원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임시적 수입에서 징수규모가 가장 큰 세목은 기타수입이 10,727백만 원이며, 그 뒤를 이어 부담금 3,518백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2,274백만 원 순으로 나타남
- 특별회계(기타)는 경상적 수입이 18,936백만 원, 임시적 수입이 16,000백만 원으로 나타남
 - 이중 징수규모가 가장 큰 세목은 경상적 수입에서 사업수입이 16,030백만 원이고, 그 뒤를 이어 임시적 수입에서 부담금이 14,277백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료수입이 1,993백만 원으로 나타남
- 특별회계(공기업)의 경우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분되며 이중 사업수입이 89,791백만 원으로 사업외수입 13,808백만 원에 비해 보다 큰 징수규모를 보임

[표 2-8] 2017년 세종시의 항목별 징수실적(단위: 백만 원)

합계	179,484	일반회계	40,949	특별회계(기타)	34,936	특별회계(공기업)	103,599
경상적 수입	179,484	22,496	18,936	103,599			
임시적 수입							
소계		22,496	18,936	103,599			
재산임대료수입		955	1,993	89,791			
사용료수입		8,901	-	13,808			
수수료수입		6,006	-				
사업수입		1,193	16,030				
징수교부금수입		627	-				
이자수입		4,814	913				
소계		18,453	16,000				
재산매각수입		651	-				
부담금		3,518	14,277				

합계	179,484	일반회계	40,949	특별회계(기타)	34,936	특별회계(공기업)	103,599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등	2,274	1,192				
	기타수입	10,727	61				
	지난년도수입	1,283	470				

자료: 행정안전부(2018). 「2018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세종시의 경상적 세외수입(일반회계)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기타수입이 7,747백만 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이자 4,467백만 원을 차지함
 - 그밖에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3,426백만 원, 기타가 1,662백만 원,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952백만 원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2-9]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실적(일반회계)(단위: 백만 원)

합계	41,434		
일반회계	22,498		
1. 재산임대수입	955	4. 사업수입	1,194
가. 공유재산임대료	3	가. 사업장생산수입	-
나. 공유재산임대료	952	나. 주차요금수입	196
2. 사용료수입	8,901	다. 통행료수입	-
가. 도로	829	라. 청산금수입	-
나. 하천	325	마. 분담금수입	-
다. 하수도	-	바. 매각사업수입	-
라. 상수도	-	사. 배당금수입	-
마. 시장	-	아. 의료사업수입	801
바. 도축장	-	자. 기타사업수입	197
사. 입장료	-		
아. 기타	7,747		
3. 수수료수입	6,007	5. 징수교부금수입	627
가. 증지수입	820	가. 징수교부금수입	627
나.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3,426		
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99		
라. 기타	1,662		
		6. 이자수입	4,814
		가. 공공예금이자	4,467
		나.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
		다. 통화금융기관융자금회수이자수입	-
		라. 공사공단융자금회수이자수입	-
		마. 시·군·구용자금회수이자수입	-
		자. 기타이자수입	347

자료: 행정안전부(2018). 「2018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경상적 세외수입 특별회계(기타)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 수입 중 매각사업수입이 16,015백만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징수실적을 보임.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가 1,993백만 원,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 913백만 원의 순으로 나타남

[표 2-10]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실적(특별회계(기타))(단위: 백만 원)

합계	41,434		
특별회계 (기타)	18,936		
1. 재산임대수입	1,993	4. 사업수입	16,030
가. 국유재산임대료	-	가. 사업장생산수입	-
나. 공유재산임대료	1,993	나. 주차요금수입	-
2. 사용료수입	-	다. 통행료수입	-
가. 도로	-	라. 청산금수입	15
나. 하천	-	마. 분담금수입	-
다. 하수도	-	바. 매각사업수입	16,015
라. 상수도	-	사. 배당금수입	-
마. 시장	-	아. 의료사업수입	-
바. 도축장	-	자. 기타사업수입	-
사. 입장료	-		
아. 기타	-		
3. 수수료수입	-	5. 징수교부금수입	-
가. 증지수입	-	가. 징수교부금수입	-
나. 쓰레기처리비용투판매수입	-		
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라. 기타	-		
		6. 이자수입	913
		가. 공공예금이자	913
		나. 민간용자금회수이자수입	-
		다. 통화금융기관용자금회수이자수입	-
		라. 공사공단용자금회수이자수입	-
		마. 시·군·구용자금회수이자수입	-
		자. 기타이자수입	-

자료: 행정안전부(2018). 「2018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일반회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타 수입에서 그 외 수입이 10,617백만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징수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이 3,161백만 원, 지난년도 수입이 1,283백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과태료가 1,276백만 원 순으로 나타남

[표 2-11]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실적(일반회계)(단위: 백만 원)

합계	34,453		
일반회계	18,453		
1. 재산매각수입	651	4. 기타수입	10,727
가.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	가. 불용품매각대	110
나.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	나. 체납처분수입	-
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651	다. 보상금수납금	-
2. 부담금	3,518	라. 시도비반환금수입	-
가. 자치단체간부담금	357	마. 기부금	-
나. 일반부담금	3,161	바. 그 외 수입	10,617
3.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274	5. 지난년도수입	1,283
가. 과징금및이행강제금	943		
나. 변상금및위약금	55		
다. 과태료	1,276		

자료: 행정안전부(2018). 「2018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 임시적 세외수입 특별회계(기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이 14,277백만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징수실적을 보여줌.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과태료가 1,192백만 원, 지난년도 수입이 470백만 원으로 나타남

[표 2-12]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실적(특별회계(기타))(단위: 백만 원)

합계	34,453		
특별회계 (기타)	16,000		
1. 재산매각수입	-	4. 기타수입	61
가.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	가. 불용품매각대	-
나.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	나. 체납처분수입	-
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	다. 보상금수납금	-
2. 부담금	14,277	라. 시도비반환금수입	-
가. 자치단체간부담금	-	마. 기부금	-
나. 일반부담금	14,277	바. 그 외 수입	61
3.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192	5. 지난년도수입	470
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		
나. 변상금 및 위약금	-		
다. 과태료	1,192		

자료: 행정안전부(2018). 「2018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재구성

2. 세외수입의 문제점

1) 세외수입의 신장성 저조

-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과는 달리 매 회계연도 마다 지속·반복적으로 재원이 조달되어서 보다 안정성 및 지속성이 확보되는 수입입(이상훈·사명철, 2016; 김홍주, 2018)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비해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 세수의 안정성이 높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됨
 - 세종시의 일반회계 기준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율이 3.3%를 보이는데 반해, 임시적 세외수입은 2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2) 전담인력 및 조직 구성의 한계

-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는 근거 법령에 의해서 각기 실과가 따로 배치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는 세무부서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 세종시는 2019년 9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에 세정담당관에서 세원관리과로 확대 개편되어 징수, 세무조사, 세외수입 담당으로 그 계가 구성되었음. 그러나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담당인력은 여전히 세외수입 담당 총괄, 세외수입 체납총괄, 세외수입결산 및 통계, 과·오납, 세외수입 권한 신청 등을 중심으로 총 4명에 한정됨
- 현재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해서는 개별법령,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포함하면 약 200여개의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세종시는 세외수입의 조사 및 징수, 수납액 관리 등은 총괄 부서인 세원관리과에서 담당하나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부재하다고 판단됨

3) 현저히 낮은 원가 보상을

- 세종시의 세외수입의 한계는 공급원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요금

수준에 있을 것임

- 고승희 외(2015)의 연구에 의하면 낮은 원가보상율은 서비스에 대한 과잉수요, 자원의 낭비, 비효율적인 배분에 기인하며 결국 적자보전을 위해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함
- 김흥주(2018)는 세종시의 세외수입의 효율적정성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세목이 원가에 50%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현재 세외수입의 원가가 낮은 이유로 주요하게 지적되는 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낮은 인식, 체계적 관리부족(징수근거법률, 조례 등 법적 근거가 다양),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주요관심에서 멀어지는 현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용료·수수료의 경우 공공요금으로서의 인식에 기인해 요율을 적정하게 조정할 기회가 많지 않음이 제시되기도 함(김진욱·김진태, 2018; 김흥주, 2018)

4) 관련법규개정 및 원가분석의 어려움

- 지방세외수입의 원가보상율은 각기 개별적인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한계가 있음. 그리고 무엇보다 세외수입의 요율을 규정하는 근거 법규가 다양할 뿐 아니라 광범위해 환경변화에 신속적, 탄력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고승희 외, 2015)
- 아울러 원가분석을 통한 세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나 문제는 원가분석을 위한 회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일례로 세종시는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각종 운영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음

3. 세종시의 사용료 현황 검토

1) 해당 부서별 사용료 조사현황

- 세외수입 요율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각 부서별(세종시 29개<직속기관, 읍·면·동 포함>)로 사용료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표를 받아 각각의 현황을 파악하여 [표 2-13]과 같이 제시함

[표 2-13] 해당 부서별 사용료 조사 결과

연번	부서명		사용료 조사표		
1	행정부시장		조사표 회신		
2	실·국·본부	운영지원과			
3		시민안전실		치수방재과	
4		자치분권국		재난관리과	
5		경제산업국		자치분권과	
6				기업지원과	
7		건설교통국		일자리정책과	
8				교통과	
9				도로과	
10		보건복지국		농업축산과	
11		문화체육관광국		노인장애인과	
12		직속기관		공공건설사업소	관광문화재과
13				시설사업소	시설2팀 녹지관리과
14		읍·면·동	조치원읍		
15	종촌동				
16	고운동				
17	새롬동				
18	도담동				
19	대평동				
20	보람동				
21	소담동				
22	한솔동				
23	아름동				
24	소정면				
25	전의면				
26	전동면				
27	금남면				
28	연동면				
29	장군면				

2) 사용료 현황 분석

- 세외수입 요율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각 부서별로 사용료 수입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표를 받아 각각의 사용료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표 2-14]와 같이 제시함
- 다음 [표 2-14]는 자치분권과, 기업지원과 등을 비롯한 총 29개 부서를 중심으로 세외수입의 사용료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즉, 34개의 목, 62개의 세목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근거를 제시함

[표 2-14] 세외수입 사용료 현황

담당부서	목	세목	사용료 법적근거
자치분권과	기타사용료	주민등록 자료사용료	주민등록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기업지원과	기타사용료	주차장사용료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일자리정책과	기타사용료	주차장사용료 (세종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주차장)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기타사용료 (임주기관관리비)	법적근거 없음 (전용 및 공용면적을 배분하여 산출함)
교통과	기타사용료	장애인콜택시 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
		기타사용료 (공사공단: 공영버스 매표행위로 발생되는 수입)	지방회계법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노인장애인과	기타사용료	장례식장 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화장장 사용료	
		봉안당 사용료	
녹지관리과	기타사용료	공원사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42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0조
농업축산과	기타사용료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 (농립축산 식품부	국유재산법 제32조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담당부서	목	세목	사용료 법적근거
		소관 국유재산의 본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공공 사업소 시설2팀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어진동 복컴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2조, 제31조, 제32조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 제28조
		기타사용료 (어진동 복컴 관리비: 어린이집, 문화재단, 교통공사, 고려대 행정전문 대학원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의한 허가조건 및 수익자분담금
		기타사용료 (대평동 복컴 관리비: 어린이집 등)	
		기타사용료 (대평동 복컴 방역비)	
		기타사용료 (대평동 상하수도 요금 원인자 부담금: 영남기공, 현진토건, 케이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원인자부담금
		기타사용료 (대평어린이집 복컴 관리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2조
		재난 관리과	기타사용료 (컨테이너 사용료 징수)
도로과	도로사용료	계속도로사용료	도로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일시도로사용료	도로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기타사용료	국유재산사용료 (농경지, 진출입로, 마당부지 등)	국유재산법 제32조
		공영자전거 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관광 문화재과	기타사용료	초려역사공원 대관료	면제대상

담당부서	목	세목	사용료 법적근거
치수 방재과	하천사용료	하천점사용료 (지반조사, 부지조성, 진출입로 개설, 경작, 공작물 설치, 레저 등)	하천법 제37조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 제5조
		하천수사용료 (공업용수, 발전용수 등)	하천법 제50조 제5항,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5조
		하천사용료 변상금	하천법 제3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소하천점사용료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합강캠핑장 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기존 세종특별자치시 합강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제7조	
조치원읍	기타사용료	부설주차장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 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7조
		기타사용료 (생활문화센터 대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종촌동	하천사용료	하천점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 제5조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복검내 체육관 및 문화실 대관료)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 제10조
고운동	기타사용료	체육시설사용료 (복검내 체육관 대관 및 사용료, 탁구장 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 제10조
		기타사용료 (교실 등 시설사용료)	
새롬동	기타사용료	체육시설사용료 (복검2층 체육시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제10조
		기타사용료 (복검내 어린이집, 콩카페 공공요금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도담동	기타사용료	체육시설사용료 (체육관 대관 및 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제10조

담당부서	목	세목	사용료 법적근거
		기타사용료 (문화실 등 복컴내 시설 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대평동	기타사용료	체육시설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제10조
		기타사용료 (어린이집 공공요금 분담금)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보람동	하천사용료	하천수사용료 (공업용수)	하천법 제50조 제5항,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5조
	기타사용료	체육시설사용료 (복컴내 체육시설 대관료)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제10조
		기타사용료 (복컴내 일반대관시설 대관료, 공공요금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소담동	기타사용료	체육시설사용료 (탁구대, 배드민턴, 농구대 이용료)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3조, 제10조
		기타사용료 (복컴내 강의실 등 대관시설이용료)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한솔동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복컴 내 문화실 등 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아름동	기타사용료	체육시설사용료 (솔뜰근린공원 풋살시설 이용대관료)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제10조
		체육시설사용료 (오가남뜰근린공 원 제1풋살 이용대관료)	
		체육시설사용료 (오가남뜰근린공 원 제2풋살 이용대관료)	

담당부서	목	세목	사용료 법적근거
소정면	기타사용료	체육시설사용료 (체력단련실 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전의면	기타사용료	체육시설사용료 (전의생활체육공 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제10조
전동면	하천사용료	하천점사용료 (경작, 식물재식, 기타목적 등)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5조
금남면	하천사용료	하천점사용료 (관로 매설, 농경지 진출입로, 식물재식, 공작물, 기타목적 등)	하천법 제37조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5조
		하천수사용료 (공업용수)	하천법 제50조 제5항,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5조
연동면	하천사용료	하천점사용료 (관로 등 매설, 경작, 기타목적, 야적장, 일반공작물 등)	하천법 제37조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5조
		하천수사용료 (생활용수)	하천법 제50조 제5항,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제5조
장군면	기타사용료	체육시설사용료 (체력단련실 냉난방 및 전기요금, 기구 유지보수관리)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하천사용료	소하천점사용료 (진출입로, 관로매설, 경작)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 제5조
		하천점사용료 (진출입로, 경작, 송유관 매설)	하천법 제37조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 제5조
		하천수사용료 (비산면지방지 등 작업용수, 공업용수)	하천법 제50조 제5항,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 제5조
기타사용료	목욕탕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세종시의 세외수입 요율 분석

제1절 원가계산 대상과 기본가정

제2절 세외수입 원가분석

제3절 세외수입 적정 요율산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3장 세종시의 세외수입 요율 분석

1절 원가계산 대상과 기본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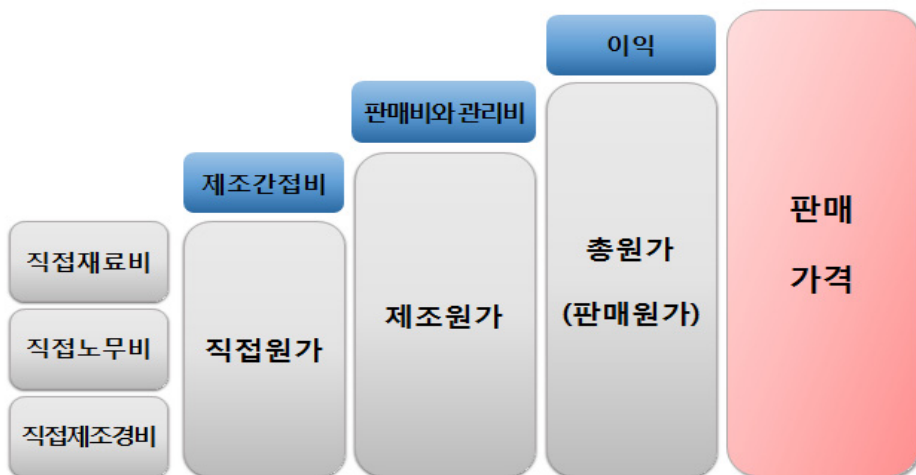
1. 원가개념 및 원가계산

1) 원가의 개념, 분류, 그리고 구성

- 원가(Cost)의 개념은 특정자원을 얻기 위해 소비된 자원의 가치, 제품 1단위당 소모되는 원재료, 노동력, 전기가스 소모액, 생산설비 소모량 등을 포괄적으로 집계한 것으로 이해함(주운현, 2008; 김흥주, 2018)
 - 원가는 취득원가와 제조원가로 구분됨. 이중 취득원가는 재화나 용역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가치를 의미하며 부동산 중개료, 취·등록세 등에 해당되며 제조원가는 자원의 가치를 의미하며 재료원가, 급여 등에 해당됨. 그러나 생산을 위해 정상적으로 소모되는 경제적 가치 외의 활동에서 소모되는 것은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원칙임(주운현, 2008)
- 원가는 크게 발생형태(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원가의 3요소), 제품 및 부문의 추적가능성(직접비, 간접비), 원가의 형태(고정비, 변동비), 그리고 그밖에 기초원가, 가공비 등 네 가지로 구분됨¹⁾
 - 첫째, 발생형태에 의한 구분은 제품의 제조를 위해 소모되는 원재료 및 부재료비에 포함된 재료비, 노무비, 감가상각비, 가스비, 수도비, 전력비 등이며 제품의 제조를 위해 소모되는 요소에 해당됨
 - 둘째, 제품 및 부문의 추적가능성에 의한 구분은 특정제품의 제조를 위해서만 소비되는 것으로, 추적이 가능한 직접비(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등), 여러 제품의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등에 기인해 추적이 불가능한 간접비(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제조경비 등)로 구분함

1) 원가분류는 김흥주(2018)의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함

- 셋째, 원가의 형태에 따라서 총원가와 비례해 조업도 변하면 변동비(통화요금, 통화량에 따라 원가가 변동), 이와 관계없이 원가 총액이 관련 범위 내 일정한 고정비(기본료, 통화량에 관계없이 요금발생)로 구분됨
 - 마지막으로,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기본원가로서의 기초원가, 총 제조원가에서 직접재료비를 제외한 가공비로 구분함
- 원가의 구성은 직접원가(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실무에서 파악이 불가능한 직접제조경비), 제조원가(직접원가에 제조간접비 포함), 총원가(제조원가에 판매비와 관리비 포함)로 구분되며 다음 아래의 [그림 3-1]과 같이 제시됨



[그림 3-1] 원가의 구성

자료: 김홍주(2018: 67)

2) 원가계산 방식

- 원가계산 방식은 전통적 원가계산 방식과 활동기준 원가계산(ABC: Activity-Based Costing)으로 구분됨. 전통적 원가계산방식은 제조간접비를 집계·배부하는데 있어 노동 및 기계시간 등 한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식인데 반해, 활동기준 원가계산은 활동(Activity)이 원가계산의 기초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 차이가 있음 (주운현, 2008)

- 활동기준 원가계산은 제품의 원가가 과소 혹은 과대 배부될 가능성 등 원가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한계점이 제기되는 전통적 원가계산방식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제안됨
- 즉, 원가를 생산과 관련된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처리, 작업 준비비, 감독비, 재료취급비, 운반비와 같은 원가동인(cost driver)근거 제품으로 배부하는 방식임(고승희 외, 2015)

[표 3-1] 원가계산 방식의 비교

항목	전통적 원가계산	활동기준 원가계산(ABC)
기본가정	각 제품이 자원을 소비	활동이 자원을 소비하고, 제품이 활동을 소비
초점	원가관리	활동관리
원가배부기준	직접노무비, 기계시간 등 생산관련 지표	활동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원가동인
원가배부대상	단일원가대상(제품이나 작업)	다양한 원가대상 (제품라인, 고객, 공급자, 유통경로)
배분기준의 수	적다(노무원가, 노동시간, 기계시간, 생산수량)	많다(기계시간, 구매주문횟수, 작업준비횟수, 생산주문횟수, 검사횟수 등)
제조간접원가와 배분기준의 인과관계 정도	인과관계가 적음	인과관계가 큼
원가정보의 정확성	과소/ 과대배부 문제(낮음)	높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적음	큼

자료: 고승희 외(2015); 김홍주(2018: 68) 재인용

2. 원가계산의 대상 및 기본가정

1) 세종시의 세외수입 원가계산 대상

- 현재 세종시(실·국·과, 직속기관, 읍·면·동)를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수집된 세외수입 세목이 총 62종이 있으며 이 중 세외수입항목 원가 분석을 검토할 수 있는 세외수입항목만을 대상으로 원가 기초자료를 다시 요청하여 수집하였음
 - 세외수입에 대한 정확한 원가분석에는 그 한계가 있는 데 그 이유는 원가를 고려한 회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별도의 자료를 활용해 도출해야하기 때문임
- 따라서 보다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해 각 세외수입 회계담당자에게 검토·확인을 2차례 거친 후 이중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연구자 등과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5개의 세목을 선정하였음
 -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해 각 부서별 회계담당자로부터 기초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제공된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결산자료를 통해 계산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분석대상에 포함시킴
 - 즉, 제공된 자료를 통해 원가 도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원가도출을 통해 세외수입 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세외수입 담당자(실·국·과, 읍·면·동, 직속기관 담당자) 들을 중심으로 ‘상’, ‘중’, ‘하’로 평가해 각기 항목 당 ‘중’이상의 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3-2] 세종시의 원가분석 세외수입 항목

연번	사용료·수수료	가능성	의미성	분석대상 선정
1	주민등록자료사용료	하	하	×
2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	중	상	○
3	주차타워 주차장 사용료	중	상	○
4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기관 관리비	중	하	×

연번	사용료·수수료	가능성	의미성	분석대상 선정
5	장애인콜택시사용료	중	중	○
6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및 시외버스 임대료	중	하	×
7	컨테이너 사용료	상	하	×
8	어진동 복검사용료	하	상	×
9	어진동 복검관리비	하	중	×
10	대평동 복검관리비	하	중	×
11	대평동 상하수도 요금 원인자 부담금	상	하	×
12	공영자전거사용료	중	상	○
13	초려역사공원대관료	중	하	×
14	조치원부설주차장사용료	하	상	×
15	조치원생활문화센터대관료	중	하	×
16	복검 내 체육관 및 문화시설 등 대관료	하	중	×
17	복검 내 체육시설(탁구장 등)사용료	하	상	×
18	복검 내 시설사용료(교실, 문화실 등)	하	상	×
19	복검 내 공공요금사용료 (어린이집, 콩카페 등)	하	상	×
20	풋살시설 이용 대관료(솔뜰근린공원)	하	상	×
21	제1풋살 시설이용대관료 (오가낭뜰근린공원)	하	상	×
22	제2풋살 시설 이용대관료 (오가낭뜰근린공원)	하	상	×
23	주민자치센터 체육시설사용료	하	중	×
24	전의면 축구장사용료	중	상	○
25	전의면 테니스장사용료	하	상	×

2) 세종시 세외수입 원가계산을 위한 기본가정과 방법²⁾

- 세종시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원가계산은 활동기준 원가계산이 실제 반영되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물적, 인적자원의 한계로 전통적 원가계산 방식을 활용하기로 판단함
- 원가분석을 위해 결산자료에 근거한 운영비, 해당시설의 건물 및 기계 장비(시설장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리고 해당시설이 위치한 토지 가액을 근거로 자본비용을 구분해 계산함

2) 본 연구에서 세외수입의 원가계산을 위한 기본가정과 방법은 주로 고승희 외(2015)의 연구를 참고하였음을 밝힘

- 운영비용: 재료비, 인건비, 경비(민간위탁경비, 경상이전 경비, 통신, 전기, 가스, 기타 유지비 등)
- 감가상각비: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참고, 정액법을 활용)
- 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이 있으며 이 중 자기자본비용에 대해서는 국채수익율 2.1%활용(2018년 7월 3년 만기인 국채수익율)

[표 3-3]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구분	내용연수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그 밖의 구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
4	4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2]〉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건축물이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2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건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 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 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중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축물과 그 밖에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적용한다.
4.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건축물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토목시설 및 그 밖의 수도시설: 30년(취수 도수 정수 배수지설비시설 등)

- PVC관, PE관: 20년
- 아연도강관: 10년
- 그 밖의 관(재질에 따라): 20년-30년
- 수도관 부속설비: 20년-30년
- 하수도처리장시설
 - 슬리지 처리시설: 20년
 - 그 밖의 수거처리시설: 30년
 - 중계펌프장시설: 30년
- ※ 슬리지처리시설은 농축조, 소화조, 탈수기동, 저류조 등을 의미하고, 수처리시설은 침사지, 유입펌프장, 1차침전지, 생물반응조, 2차침전지, 소독 및 방류시설·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을 의미함
- 하수관거시설
 - 구조물시설(BOX 등): 30년
- 5.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건축물, 도시철도차량(부수 운반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건축물(터널): 60년
 - 도시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사용내구연한에 따른다.

2절 세외수입(공공시설 사용료) 원가분석

1. 주차장 원가분석 결과

1) 세종시 공영주차장(조치원 전통시장+주차타워)

- 세종시 조치원의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주차장과 주차타워 주차장으로 구분되어 운영됨. 그러나 두 개 주차장 운영회계가 명확하지 구분되지 않고 통합되어 운영되는 한계가 있어서 운영경비를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우선적으로 두 개의 주차장을 통합(전통시장+주차타워)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후 회계담당자와의 논의를 통해 면밀히 자료를 분석해 운영경비를 분리한 결과 값을 도출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전통시장과 주차타워 분리)
 - 다만 인건비의 경우 두 주차장의 인력이 순환보직으로 이루어져 인건비 지출규모가 거의 유사해 각기 1/2로 나눈 값을 설정함

(1)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 운영비

-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 운영비용 합계금액은 475,698천 원으로 이 중 운영비는 인건비와 경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4]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 운영비(단위: 천 원)

구분	재료비	인건비	경비	운영비 계
2018년 비용	-	253,195	222,503	475,698

(2)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 감가상각비

-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의 감가상각비 합계금액은 83,252천 원으로 건물의 감가상각비의 경우 내용연수를 20년, 40년으로 각각 적용하여 산정함

[표 3-5]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 감가상각비(단위: 천 원)

구분	건물가액	기계·장비 등	건물 감가상각비	기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계
2018년 비용	2,827,461	-	83,252	-	83,252

(3)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 자본비

-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의 자본비용 합계금액은 264,258천 원으로 토지가액에 대해 적정투자보수율인 2.10%(2018년 7월 기준)를 적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계산함

[표 3-6]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 자본비(단위: 천 원)

구분	토지가액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자본비 계
2018년 비용	12,583,720	264,258	-	264,258

(4)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 시설원가

-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의 시설원가 금액은 823,209천 원으로 이는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그리고 자본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표 3-7]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 시설원가(단위: 천 원)

구분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시설원가 계
2018년 비용	475,699	83,252	264,258	823,209

(5)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의 기준단위는 주차대수(유료)로 하였으며, 2018년 기준 341,412대로 나타남

[표 3-8]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 기준단위

구분	유료	계
주차대수	341,412	341,412

- 2018년 기준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의 기준 단위당 운영비용은 1,393원이며 기준단위당 시설원가는 2,411원에 해당함

[표 3-9] 공영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 기준단위당 원가

기준단위수 (명)	운영비용 (천원)	시설원가 (천원)	단위당운영비 (원)	단위당원가 (원)
341,412	475,699	823,209	1,393	2,411
총 세외수입 금액(천원)		218,445		

2) 조치원 전통시장 주차장

(1)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비

-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비용 합계금액은 201,411천 원으로 이 중 인건비와 경비를 중심으로 구성됨

[표 3-10]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비(단위: 천 원)

구분	재료비	인건비	경비	운영비 계
2018년 비용	-	126,597	74,814	201,411

(2) 전통시장 주차장 감가상각비

- 전통시장 주차장의 감가상각비 합계금액은 25,133천 원으로 건물의 감가상각비의 경우 내용연수는 20년(부식시설)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표 3-11] 전통시장 주차장 감가상각비(단위: 천 원)

구분	건물가액	기계·장비 등	건물 감가상각비	기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계
2018년 비용	502,679	-	25,133	-	25,133

(3) 전통시장 주차장 자본비

- 전통시장 주차장의 자본비용 합계금액은 34,012천 원으로 토지가액에 대해 적정투자보수율인 2.10%(2018년 7월 기준)를 적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계산함

[표 3-12] 전통시장 주차장 자본비(단위: 천 원)

구분	토지가액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자본비 계
2018년 비용	1,619,623	34,012	-	34,012

(4)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원가

- 전통시장 주차장의 시설원가 금액은 260,556천 원으로 이는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그리고 자본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표 3-13]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원가(단위: 천 원)

구분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시설원가 계
2018년 비용	201,411	25,133	34,012	260,556

(5) 전통시장 주차장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 전통시장 주차장의 기준단위는 주차대수로 하였으며, 2018년 기준 97,565대로 나타남

[표 3-14] 전통시장 주차장 기준단위

구분	유료	계
주차대수	97,565	97,565

- 2018년 기준 전통시장 주차장의 기준 단위당 운영비용은 2,064원이며 기준단위당 시설원가는 2,670원에 해당함

[표 3-15] 전통시장 주차장 기준단위당 원가

기준단위수 (명)	운영비용 (천원)	시설원가 (천원)	단위당운영비 (원)	단위당원가 (원)
97,565	201,411	260,556	2,064	2,670
총 세외수입금액(천원)			52,872	

3) 조치원 주차타워 주차장

(1) 주차타워 주차장 운영비

- 주차타워 주차장의 운영비용 합계금액은 274,286천 원으로 이 중 인건비와 경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16] 주차타워 주차장 운영비(단위: 천 원)

구분	재료비	인건비	경비	운영비 계
2018년 비용	-	126,597	147,689	274,286

(2) 주차타워 주차장 감가상각비

- 주차타워 주차장의 감가상각비 합계금액은 58,119천 원으로 건물의 감가상각비의 경우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표 3-17] 주차타워 주차장 감가상각비(단위: 천 원)

구분	건물가액	기계·장비 등	건물 감가상각비	기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계
2018년 비용	2,324,782	-	58,119	-	58,119

(3) 주차타워 주차장 자본비

- 주차타워 주차장의 자본비용 합계금액은 230,246천 원으로 토지가액에 대해 적정투자보수율인 2.10%(2018년 7월 기준)를 적용해 자기자본비용을 계산함

[표 3-18] 주차타워 주차장 자본비(단위: 천 원)

구분	토지가액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자본비 계
2018년 비용	10,964,097	230,246	-	230,246

(4) 주차타워 주차장 시설원가

- 주차타워 주차장의 시설원가 금액은 562,652천 원으로 이는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그리고 자본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표 3-19] 주차타워 주차장 시설원가(단위: 천 원)

구분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시설원가 계
2018년 비용	274,287	58,119	230,246	562,652

(5) 주차타워 주차장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 주차타워 주차장의 기준단위는 주차대수로 하였으며, 2018년 기준 243,847대로 나타남

[표 3-20] 주차타워 주차장 기준단위

구분	유료	계
주차대수	243,847	243,847

- 2018년 주차타워 주차장의 기준단위당 운영비용은 1,125원이며 기준 단위당 시설원가는 2,307원에 해당함

[표 3-21] 주차타워 주차장 기준단위당 원가

기준단위수 (명)	운영비용 (천원)	시설원가 (천원)	단위당운영비 (원)	단위당원가 (원)
243,847	274,287	562,652	1,125	2,307
총 세외수입금액(천원)			165,573	

2. 체육시설 및 공영자전거 원가분석 결과

1) 전의면 체육공원 축구장

(1) 체육공원 축구장 운영비

- 체육공원 축구장의 운영비용 합계금액은 56,042천 원으로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됨

[표 3-22] 체육공원 축구장 운영비(단위: 천 원)

구분	재료비	인건비	경비	운영비 계
2018년 비용	2,580	40,130	13,332	56,042

(2) 체육공원 축구장 감가상각비

- 체육공원 축구장의 감가상각비 합계금액은 2,745천 원으로 건물의 감가상각비의 경우 내용연수를 40년, 기계장비의 경우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표 3-23] 체육공원 축구장 감가상각비(단위: 천 원)

구분	건물가액	기계·장비 등	건물 감가상각비	기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계
2018년 비용	85,805	3,000	2,145	600	2,745

(3) 체육공원 축구장 자본비

- 체육공원 축구장의 자본비용 합계금액은 149,475천 원으로 토지가액에 대해 적정투자보수율인 2.10%(2018년 7월 기준)를 적용하여 자기자본 비용을 계산함

[표 3-24] 체육공원 축구장 자본비(단위: 천 원)

구분	토지가액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자본비 계
2018년 비용	7,117,858	149,475	-	149,475

(4) 체육공원 축구장 시설원가

- 체육공원 축구장의 시설원가 금액은 208,262천 원으로 이는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그리고 자본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표 3-25] 체육공원 축구장 시설원가(단위: 천 원)

구분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시설원가 계
2018년 비용	56,042	2,745	149,475	208,262

(5) 체육공원 축구장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 체육공원 축구장의 기준단위는 이용횟수로 하였으며, 2018년 기준 212회로 나타남
 - 체육경기를 중심으로 2시간 이내부터 8시간 이내 이용자의 총합계를 기준단위로 정하였음

[표 3-26] 체육공원 축구장 기준단위(횟수)

구분	체육경기	체육외행사	계	비고
2시간 이내	160	-	160	-
4시간 이내	50	-	50	
8시간 이내	2	-	2	
계	212	-	212	

- 2018년 기준 체육공원 축구장의 기준단위당 운영비용은 264,349원이며 기준단위당 시설원가는 982,367원에 해당함

[표 3-27] 체육공원 축구장 기준단위당 원가

기준단위수 (횟수)	운영비용 (천원)	시설원가 (천원)	단위당운영비 (원)	단위당원가 (원)
212	56,042	208,262	264,349	982,367
총 세외수입금액(천원)			10,568	

2) 공영자전거 어울링

(1) 공영자전거 운영비

- 공영자전거의 운영비용 합계금액은 194,723천 원으로 이 중 재료비, 인건비, 경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28] 공영자전거 운영비(단위: 천 원)

구분	재료비	인건비	경비	운영비 계
2018년 비용	139	35,984	158,600	194,723

(2) 공영자전거 감가상각비

- 공영자전거의 감가상각비 합계금액은 2,250천 원으로 건물의 감가상각비의 경우 40년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 기계·장비의 경우 LH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여 기계 및 장비 등의 감가상각비는 포함시키지 않음

[표 3-29] 공영자전거 감가상각비(단위: 천 원)

구분	건물가액	기계·장비 등	건물 감가상각비	기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계
2018년 비용	90,000	-	2,250	-	2,250

(3) 공영자전거 자본비

- 공영자전거의 자본비용 합계금액은 14,665천 원으로 토지가액에 대해 적정투자보수율인 2.10%(2018년 7월 기준)를 적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계산함

[표 3-30] 공영자전거 자본비(단위: 천 원)

구분	토지가액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자본비 계
2018년 비용	698,326	14,665	-	14,665

(4) 공영자전거 시설원가

- 공영자전거의 시설원가 금액은 211,638천 원으로 이는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그리고 자본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표 3-31] 공영자전거 시설원가(단위: 천 원)

구분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시설원가 계
2018년 비용	194,723	2,250	14,665	211,638

(5) 공영자전거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 공영자전거의 기준단위는 이용자수로 하였으며, 2018년 기준 57,857명으로 나타남

[표 3-32] 공영자전거 기준단위(명)

구분	총이용자수	총이용건수	비고	
정회원	연회원(12월)	1,458	-	
	반기회원(6월)	363		
	월회원(30일)	1,956		
	주회원(7일)	838		
비회원	1일	53,242	58,463	-
계	57,857	203,158		

- 2018년 기준 공영자전거의 기준단위당 운영비용은 3,365원이며 기준단위당 시설원가는 3,657원에 해당함

[표 3-33] 공영자전거 기준단위당 원가

기준단위수 (명)	운영비용 (천원)	시설원가 (천원)	단위당운영비 (원)	단위당원가 (원)
57,857	194,723	211,638	3,365	3,657
총 세외수입금액(천원)			116,000	

3. 장애인 콜택시 원가분석 결과

1) 장애인 콜택시

(1)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비용 합계금액은 708,046천 원으로 이 중 경비는 인건비, 경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됨
-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KT 건물에 임대료 들어가서 운영되므로 세종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2018년 6월 이전에는 보증금 1억 2천에 월 300천 원, 2018년 6월에 재계약을 해 보증금 없이 월 1,850천 원을 부과해 운영비에 임대 지원비를 포함시킴
- 아울러 보증금이 있는 1억 2천에 대한 300천 원을 보증금 없는 월세로 환원하면 800천 원에 해당(산식: 전세금-보증금×5%÷12개월=월세)

[표 3-34]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단위: 천 원)

구분	재료비	인건비	경비	계
2018년 비용	-	576,278	131,768	708,046

(2) 장애인 콜택시 감가상각비 및 자본비

- 장애인 콜택시의 감가상각비 합계금액은 24,594천 원으로 기계장비(승강구 보조자동발판, 중형승합차, 차량도장 등) 감가상각비의 경우 내용 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건물가액을 통한 감가상각비, 자본비 등은 KT 소유이므로 포함시키지 않음

[표 3-35] 장애인 콜택시 감가상각비(단위: 천 원)

구분	건물가액	기계·장비 등	건물 감가상각비	기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계
2018년 비용	-	122,973	-	24,594	24,594

(3) 장애인 콜택시 시설원가

- 장애인 콜택시의 시설원가 금액은 732,640천 원으로 이는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그리고 자본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표 3-36] 장애인 콜택시 시설원가(단위: 천 원)

구분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시설원가 계
2017년 비용	708,046	24,594	-	732,640

(4) 장애인 콜택시 기준단위 및 단위당 원가

- 장애인 콜택시의 기준단위는 이용자수로 하였으며, 2018년 기준 33,508명으로 나타남
 - 장애인 콜택시는 권역내만 운영하기에 권역 내 이용자수 만을 파악함

[표 3-37] 장애인 콜택시 기준단위

구분	권역내	권역 외	계	비고
이용자수	33,508	-	33,508	-

- 2018년 기준 장애인 콜택시의 기준단위당 운영비용은 21,131원이며 기준단위당 시설원가는 21,596원에 해당함

[표 3-38] 장애인 콜택시 기준단위당 원가

기준단위수 (명)	운영비용 (천원)	시설원가 (천원)	단위당운영비 (원)	단위당원가 (원)
33,508	708,046	732,640	21,131	21,596
총 세외수입금액(천원)			46,386	

4. 공공시설 사용료 요율분석

- 사용료의 원가보상율을 파악하기 위해 각 세외수입(사용료) 당 수입금액 대비 원가를 비교하였음(사용료 수입금÷원가×100)
 - 공영주차장의 경우 앞서 설명하였지만 운영경비의 정확한 분리의 한계 점에 기인해 두 개의 주차장(전통시장+주차타워)을 통합하여 분석, 그리고 분리하여 각각 분석을 시도하였음
 - 요금현실화율 1은 사용료 수입금÷원가(운영비), 요금현실화율 2는 사용료 수입금÷원가(시설원가<운영비+감가상각비+자본비>)로 계산함
- 분석결과 장애인 콜택시 사용료, 전의생활체육공원(축구장) 사용료 요금의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원가보상율이 낮은 세외수입(약 10%내외의 요율)의 경우 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해 사용료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적정화 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임

[표 3-39] 세종시의 세외수입 요금 원가보상율

사용료 종류	요금현실화율 1(%)	요금현실화율 2(%)
공영주차장 사용료 (전통시장+주차타워)	45.92	26.54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	26.25	20.29
조치원 주차타워(주차장) 사용료	60.36	29.43
장애인 콜택시 사용료	6.55	6.33
공영자전거 사용료	59.57	54.81
전의생활체육공원(축구장) 사용료	18.86	5.07

5. 자치단체별 사용료 수입 관련 조례 비교

- 다음 아래의 표는 세종시와 세종시의 인접 자치단체인 대전, 충남, 충북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사용료 현황을 분석한 내용임. 이를 통해 세종시와 세종시 인근 자치단체와의 사용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을 것임
- 다음 아래의 [표 3-40]은 세종시와 대전, 충남 공주, 충북 청주의 공영 자전거 사용료를 비교한 것임

[표 3-40] 세종 및 세종인접지역 공영자전거 기본 사용료(단위: 원)

세종		대전		충남 공주	충북 청주
회원	- 1년: 30,000 - 6개월: 20,000 - 30일: 5,000 - 7일: 2,500	회원	- 1년: 30,000 - 30일: 5,000 - 7일: 2,000	- 무료임대	- 민간위탁
비회원	- 1일 이용권: 1,000	비회원	- 1일 이용권: 500		

- 다음 아래의 [표 3-41]은 세종시와 대전, 충북 청주의 공원 사용료를 비교한 것임

[표 3-41] 세종 및 세종인접지역 공원사용료

구분		세종	대전	충북 청주	
도시 공원	운동장 및 광장 등	- 1회/2시간/10원(1㎡당)	- 1회/2시간/10원(3.3㎡당)	- 사용료 조례는 없음 - 점용료 조례만 있음	
	사진촬영	- 1인/1년/100,000원	- 1인/1년/100,000원		
	영상물 촬영	- 주간1회/1일/100,000원 - 야간1회/1일/150,000원	- 주간 1회 (09:00~18:00)/50,000원		- 점용료 조례만 있음
			- 야간 1회 (18:00~22:00)/100,000원		
기타시설	- 1회/3시간/30,000원	- 운동시설 중「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구분	세종	대전	충북
			청주
		의 적용을 받는 시설 및 유흥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의 사용료는 각각 같은 법 규정에 따름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 다음 아래의 [표 3-42]는 세종시와 충남 당진, 보령의 목욕탕 사용료를 비교한 것임

[표 3-42] 세종 및 세종인접지역 목욕탕 사용료(단위: 원)

구분	세종	충남		비고
		당진	보령	
국민기초생 활수급자 장애인 (1급~6급)	해당 내용이 없음	무료	해당 내용이 없음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는 목욕탕 사용료에 관한 조례가 없음
일반(대인, 일반주민)		14세 이상/3,000		
미취학아동	해당 내용이 없음	2,000	해당 내용이 없음	
어린이 (소인)	13세 이하/2,000	해당 내용이 없음	만12세 이하/3,000	
고령자 (65세 이상)	1,000	2,000	3,000	

○ 다음 아래의 [표 3-43]은 세종시와 충남 논산, 서천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등의 사용료를 비교한 것임

[표 3-43] 세종 및 세종인접지역 장례식장, 봉안당, 화장장 사용료(단위: 천 원)

구분		세종			충남					
		관내	준관내	관외	논산	서천				
						유연고 1관	유연고 2관	무연고		
장례식장 사용료	영결식장		30		-	-	-	-		
	빈소 (시간당)	일반실	9							
		특실	17							
	안치실		2							
	연습실		50							
봉안당 사용료	기간	15년			10년	10년				
		일반	개인	270	810	150	100	150	100	
	부부		410	1,230	250					
	행복도시 관련 개장 유골	개인	190	-		-	-	-	-	
		부부	280							
	관리비	개인단	110	330		50	50	50	50	
		부부단	160	480				50		
	화장장 사용료	대인 (만15세 이상)		160	320	480	-	-	-	-
		소인 (만14세 이하)		130	260	390				
		사산아		50	100	150				
개장유골		60	130	190						

○ 다음 아래의 [표 3-44]는 세종시와 대전, 충남 천안, 충북 청주의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사용료를 비교한 것임

[표 3-44] 세종 및 세종인접지역 주차장·부설주차장 사용료(단위: 원)

구분	세종		대전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부설 주차장 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청사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청사				부설 주차장 사용료에 관한 조례가 없음			충청북도청사	작곡관 사업소 구청	상당 구청	농수산 물도매 시장		
기본		1시간/무료	1시간 30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2시간)/무료				30분/500									
초과		10분당/200	2시간 까지	최초 15분/400							10분					
				15분당/300												
1일 주차		10,000	1일 주차	2시간 초과 15분당/600							200		400		200	
				8,000							8,000		6,000		15,000	
월 정기 주차	30,000	30,000				-		-		-		55,000				
공영 주차장 사용료	소형차	그 외	토지의 급				토지의 급		환 승	토지의 급						
			1	2	3	4	1	2		1	2	3				
	기본	2시간까지		30분				10분		30분/ 무료						
		500	700	400	300	150	100									
	초과	10분		300				300		200		100				
		2시간초과		15분				10분		5분						
		500	700	600	400	300	200	300	200	200	200	100	50			
	1일 주차권	5,000	8,000	12,000	8,700	6,500	200	10,000	8,000	5,000	공영 주차장 사용료에 관한 조례가 없음					
	월 주차권	50,000	75,000	주간				80,000	60,000	40,000	13,000	8,000	3,000			
		-	-	야간				-	-	-	150,000	75,000	30,000			
			100,000	69,000	43,000	43,000	-	-	-	-	-	-				

○ 다음 아래의 [표 3-45]는 세종시와 대전, 충남 천안, 공주, 충북 청주의 장애인 콜택시 사용료를 비교한 것임

[표 3-45] 세종 및 세종인접지역 장애인 콜택시 사용료(단위: 원)

구분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천안	공주	청주	
장애인 콜택시 사용료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함 1. 관내요금: 시 관할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2. 관외요금: 시 관할 지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 요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함	-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의 일반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함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인접 시·군까지 운행할 경우 해당 구간 시내버스 요금의 6배 이내로 함
	기본요금	1,000 (3km)	1,000 (3km)	1,000 (2km)	1,400 (1.5km)	2,000 (10km)
	거리할증	200 (1km 당)	100(440m 당) 또는 100(107초 당)	100 (500m)	50 (120m 당)	10km~15km: 200(1km 당) 15km~: 200(1km)
	기타	-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	-	-	-	- 최대 한도요금: 4,000 - 인접 지역: 6,000

○ 다음 아래의 [표 3-46]은 세종시와 대전 대덕구, 충남 천안, 공주, 충북 청주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비교한 것임

[표 3-46] 세종 및 세종인접지역 체육시설 사용료(단위: 천 원)

구분		세종				대전			충남			충북				
						대덕			천안	공주		청주				
		성인	청소년	어린이	단체	성인	청소년	어린이		개인	단체	일반	군인, 청소년	어린이, 노인	유아	
일반 사용료	복합내 체육관	2시간				1				-						
		4시간	-			2	-			-	-		-			
		문화체 육센터	4시간	-			0.5	-			-	-		-		
	스포츠 센터	수영장	월이용													
			63	50	45	-	36	26	16	-	-	-	46	32.5	25.5	19
			중간값													
			월강습													
			68	55	50	-	50	40	20	-	-	-	60	45	40	30
			1회 이용													
		3	2	1.5	-	3.75	2.9	2.1	-	-	-	2.4	1.57	1.17	1.15	
		중간값														
		체력단 련실	월이용													
			60	50	-	-	40			-	-	-	35	30	17	-
			1회 이용													
		3	2	-	-	2			-	-	-	2.25	1.75	1.25	-	
		중간값														
		그 외 체육	월강습													
			60	50	40		-			-	-	-	50/클레이사격			
근린운 동장	2.5/평일, 1시간				-			-	-	-	-					
	3.5/토요일, 공휴일, 1시간				-			-	-	-	-					
체육관	2시간															
	1	0.8	0.5		-			-	1	0.7	-					
	4시간															
2	1.6	1	-	-			-	-	-	-						

구분	세종	대전		충남		충북	
		대덕		천안	공주	청주	
			(매 1일 경과 시 5 천원 추가, 연간 계 시: 공개경쟁입찰)		- 60/행사기간내, 대 형(20m~30m) - 200/1년간, 중형 (10m~20m) - 40/행사기간내, 중 형(10m~20m) - 100/1년간, 소형 (10m 미만) - 20/행사기간 내, 소형(10m 미만)		
부속시 설사용 료	냉·난방료	- 냉난방기: 전력사용량(kw/h) ×사용시간×전력요금 - 가스 및 유류대 실비	- 30(기본료)+전기요 금 및 유류대 실비	-	- 15(기본료)+실제 사 용한 전기, 유류의 가격	10(기본료)+사용량 실비	
	바닥깔이(보호매트)	20/1회	-		-	30/1일	
	조명사용료	- 20/2시간, 축구장, 야구장 - 3/2시간, 1면, 테니스장, 족구장 등	-		- 80/1게임 2시간 30분 기준, 초과시 시간당 150	- 23.33/1회, 2시간, 축구장 - 3/1회, 1면, 1시간, 풋 살장, 정구장, 테니스장	중간값

3절 세외수입 적정 요율산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1. 조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사용료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고려해야할 것임(주운현, 2005)
 - 고승희 외(2015)는 객관적 합리적 부과기준을 위해 1) 어떤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것인지, 2) 사용료의 선정에 포함되는 비용이 어떤 것인지, 3) 적절한 사용료의 수준의 책정은 어느 정도로 해야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제시함
- 세외수입 항목에 원가분석결과와 실제 세입금액을 비교분석한 이후 공공재로서 실제 어느 정도를 부여해야할 지에 대한 논의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전문가 조사를 시행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정리된 세외수입 항목에 대해 원가분석 요율 산정을 위해 연구된 주운현(2005)의 연구에서 제시된 부과기준을 반영하여 적정부과율을 살펴봄
 - 세외수입의 요율 산정을 위해 각기 8가지 기준을 제시함(공공정책, 경제적 편익, 서비스 대상자의 구분, 배제성, 경쟁성, 시장정보, 가능성, 재정 확충의 기여 등으로 구분)

[표 3-47] 요율 산정을 위한 8가지 기준

분류	주요내용
1. 공공정책	공공정책이 지녀야할 목표로의 적합성(세외수입 항목이 공공정책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적정하지 않다면 시장가격원리 적용)
2. 경제적 편익	세외수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직접 이익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기준으로서 경제적 편익의 제공여부를 말함
3. 대상자 구분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익을 누리는 피제공자의 구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요금을 부과해 충당,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 등 편익구분의 가능성여부
4. 배제성	배제가 가능한 재화인 경우는 요금부과, 배제가 불가능하면 조세 등 다른 재원으로 서비스 제공해야함

분류	주요내용
5. 경쟁성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경쟁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쟁성 여부
6. 시장정보	각종 정보들을 수집과 이해를 통해 적절한 부담률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
7. 가능성	합리적이고 적절한 부과기준이더라도 법적 근거를 통해 요금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검토(법적근거의 필요성)
8. 지방재정 기여	요금의 부과를 통해서 세외수입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위의 표를 바탕으로 주운현(2005)은 각기 8가지 기준에 대한 우선 순위와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를 제시함

[표 3-48] 세외수입 요율부과 기준 채택여부에 따른 우선순위와 가중치

기 준	우선순위	가중치(%)
1. 이 서비스가 공공정책에 부합하는가?	1	18.57
2. 행정서비스의 직접적 사용자에게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주는가?	2	17.14
3. 편익을 누리는 개인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3	13.57
4. 이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배제성이 있는가?	3	12.51
5. 이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경쟁성이 있는가?	4	12.14
6. 이 서비스에 대한 요금부과에 있어서 시장정보(원가)가 필요한가?	5	11.07
7. 해당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법률적, 행정적으로 가능한가?	6	9.14
8. 사용료의 부과수입이 지방재정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는가?	7	5.86

자료: 주운현(2005: 322); 고승희 외(2015: 82) 재인용

- 다음은 앞서 검토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기 세외수입 항목 당 8가지 기준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 여기서 전문가 조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 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등을 통한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실시함

[표 3-49] 전문가 조사 참여자

구분	내용	참여자수
전문가	- 지방재정전공 대학교수 및 박사급 연구원	7명
	- 세종시 담당공무원	2명
계		9명

2. 적정요율 산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분석결과

- 7명의 재정전문가, 2명의 담당공무원 등 총9명을 대상으로 8가지 부과 기준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는 ○,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로 표기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동의하는 숫자가 과반이 넘는 경우 위의 [표 3-48]에서 제시된 가중치 값을 적용하여 가중치의 합(공공정책의 경우 ×가 과반을 넘을 경우)을 계산해 요금의 원가보상율을 산정함
- 그러나 본 전문가 조사를 통한 8가지 기준에 대한 가중치 합은 세외 수입(사용료)의 요율을 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고보다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표 3-50] 원가보상 적정요율 산정

세외수입 항목	공공 정책	경제적 편익	대상자 구분	배제성	경쟁성	시정 정보	가능성	기여	적정 요율 (%)	요금 현실화율 1 (%)	요금 현실화율 2 (%)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	0	17.14	13.57	12.51	0	11.07	9.14	5.86	69.29	26.25	20.29
조치원 주차타워(주차장) 사용료	0	17.14	13.57	12.51	0	11.07	9.14	5.86	69.29	60.36	29.43
장애인 콜택시 사용료	0	17.14	13.57	12.51	0	11.07	9.14	0	63.43	6.55	6.33
공영자전거 사용료	0	17.14	13.57	12.51	0	11.07	9.14	0	63.43	59.57	54.81
전의생활체육공원(축구장) 사용료	0	17.14	13.57	12.51	0	11.07	9.14	5.86	69.29	18.86	5.07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

제2절 정책적 제언

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절 연구결과의 종합

- 사회복지수요의 증가 및 지방분권과 관련 지방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전자의 경우 조세에 대한 주민의 저항이 클 뿐 아니라 과세권의 제약으로 새로운 세원의 발굴에 한계가 작용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령에 크게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노력정도에 따라 세원의 개발 및 확대가 용이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령의 미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부재, 체납전담조직의 미비함과 담당인력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현실임
- 본 연구는 세종시를 대상으로 세외수입의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정확한 증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제기됨
- 이를 위해 세외수입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효율체계를 검토, 세외수입 항목별 원가분석을 실시해 현행효율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향후 세외수입 효율산정의 기초 및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세종시의 사용료에 관한 조례제정 등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는데 근거가 되고자함
- 본 연구는 세외수입 자료를 3차에 걸쳐 검토한 후 분석이 가능한 5개의 세외수입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사용료를 중심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였음
- 사용료의 원가분석을 위해 각 세외수입 담당부서로부터 결산자료 등을 받아 운영경비를 산출하였으며 토지가격, 자산취득비, 전출가격에 관한

자료 협조를 통해 자본비용과 감가상각비를 산출하여 원가를 도출함. 그리고 해당연도 세외수입 항목 당 총 수입금과 원가를 비교해 요율을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조사를 통해 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함

- 사용료 등의 원가보상율을 파악하기 위해 각 세외수입 사용료에 수입금 대비 원가를 비교(수입금÷원가×100)해 계산하였음. 그리고 분석결과 장애인 콜택시 사용료, 전의생활체육공원(축구장) 사용료 등의 원가보상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원가보상율이 낮은 세외수입(약 10%내외의 요율)의 경우 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해 사용료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적정화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임

[표 4-1] 세종시의 세외수입 요금 원가보상율

사용료 종류	요금현실화율 1(%)	요금현실화율 2(%)
공영주차장 사용료 (전통시장+주차타워)	45.92	26.54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	26.25	20.29
조치원 주차타워(주차장) 사용료	60.36	29.43
장애인 콜택시 사용료	6.55	6.33
공영자전거 사용료	59.57	54.81
전의생활체육공원(축구장) 사용료	18.86	5.07

- 다음은 7명의 재정전문가, 2명의 세외수입 담당 공직자를 대상으로 5개의 세외수입 항목에 대해 공공성, 경제성, 편익성, 배제성, 가능성, 기여, 그리고 시장정보 등 8가지의 부과기준을 근거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 그리고 부과기준 항목에 동의(○ 표기, 반대 × 표기)가 과반이 넘은 경우 주운현(2005)의 연구에서 제시한 항목별 가중치 값을 적용해 적정율을 검토함

[표 4-2] 원가보상 적정요율 산정 요약

세외수입 항목	적정요율(%)	요금현실화율 1(%)	요금현실화율 2(%)
공영주차장 사용료 (전통시장+주차타워)	-	45.92	26.54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	69.29	26.25	20.29
조치원 주차타워(주차장) 사용료	69.29	60.36	29.43
장애인 콜택시 사용료	63.43	6.55	6.33
공영자전거 사용료	63.43	59.57	54.81
전의생활체육공원(축구장) 사용료	69.29	18.86	5.07

2절 정책적 제언

□ 원가분석을 위한 회계 및 정보관리, 조직확충

- 세종시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세외수입 요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현황 파악과 함께 원가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복합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경우 회계와 원가가 연동되지 못해 원가분석을 통한 요율분석은 그 한계가 있음
- 제도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원가분석을 하도록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세외수입의 요율분석과 이를 통한 세외수입확충을 위해서 원가와 회계가 분리되지 않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더불어 원가분석을 위한 정확한 자료 뿐 아니라 정보관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임. 현재 운영원가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세종시는 전체시설을 통합한 계정을 관리하는데 그 한계가 있음. 이에 수입·지출항목의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직영으로 운영되는 경우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해 원가정보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임

□ 적정요율 산정을 위한 기준 제시 검토

- 적정한 요율을 부과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검토해야 할 것은 합리적인 결정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을 것임. 즉, 사용료 등에 대한 원가분석 이후 이 결과를 통해 적정의 요율을 검토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항목은 각기 공공성, 시장성, 편익성 등 고유의 특수성이 있기에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따라서 일괄적으로 하나의 요율을 정하기보다 그 특성에 맞는 원가보상율을 검토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함

□ **요율 현실화를 위한 정기적 검토 및 홍보 노력**

- 현재 사용료의 원가가 실제 받는 요금과 비교해 그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날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요율의 적정성 검토를 주기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임(주만수 외, 2015; 김홍주, 2018)
- 그리고 사용료 요금이 원가대비 비현실적으로 낮아 요율을 현실화 시키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당위성 인식, 그리고 사용자의 순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다시 말하면, 세외수입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 원가현실화 적용 등 궁극적으로 주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취지를 홍보해야할 것으로 사료됨(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한 이해 증진)

□ **관련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

-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입을 증대,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함
- 그리고 둘째, 세외수입의 적정요율 도출, 이를 근거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관련전문가, 담당공무원, 회계사 등이 함께 공동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 적정 요금에 대한 심의 등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복잡·다양한 상위법규에 의해 분산된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단순화 해 나가야 할 것임
- 세외수입과 관련된 법규는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개별조례로 정해 징수하게 되므로 체계적 관리에 한계에 직면, 이에 각기 사용료 요율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규정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부과 목적, 근거, 방법, 시기, 기준 등에 대한 개별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방식 등)

□ **세외수입 발굴을 위한 지속적 노력**

- 원가분석을 통해 실제 요율이 어떤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사용료를

높일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실제 지역주민, 사용자의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접근할 상황은 아닐 것임

- 이에 스포츠, 레저, 예술, 문화 등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세외수입을 발굴해 나가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임. 그러나 전제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부과방식, 지속가능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고승희 외(2015), <지방세외수입 분석과 정책방향-천안시 공공수수료 및 사용료 중심으로>, 충남연구원 연구보고서.
- 고승희·주운현(2016),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요율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천안시 사용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3권 제2호. 127~147.
- 김종순·주운현(2005), “수수료 요율결정을 위한 ABC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7권 제4호. 139~163
- 김흥주(2018), <세종시의 세외수입 요율 적정성 검토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세구(2004), <서울시 세외수입 증대방안-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주운현(2005), “사용료·수수료 요율의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 원가보상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2호. 317~335.
- 주운현(2006), “수수료 요율 결정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원가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0권 제1호. 219~246.
- 주운현(2008),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정책의 쟁점과 운영방향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2권 제1호. 71~93.
- 행정안전부, <2019년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부록1. 전문가 조사 설문지

ID		
----	--	--

『세종시 세외수입 요율 현실화 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세종시의 세외수입(사용료 중심)의 요율의 현실화 방안을 위한 연구를 위해 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원가분석을 통해 사용료 중심의 요율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의 요금이 얼마나 적정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세종시의 사용료의 적정 요율을 책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순수하게 통계적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 격무로 바쁘시겠지만 세외수입의 적정한 요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연구책임자: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연구위원

TEL:044-550-3530

e-mail: myutos78@dsi.re.kr

☞ 참고자료/분석대상 사용료 자료

세목	법적근거
전통시장 주차장 주차원 주차타워(주차장)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공영주차장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장애인 콜택시 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수입·지출)/지적장애인협회에 위탁 형식
공영자전거 사용료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세종시 공영어울링 자전거
전의생활체육공원(축구장)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공영버스 터미널	지방회계법/고속 및 시외버스 대표행위로 발생하는 수입의 세입처리

I. 세외수입 항목 당 부과기준

기준	구분
1. 이 서비스가 공공정책에 부합하는가?	공공정책
2. 행정서비스의 직접적 사용자에게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주는가?	경제적편익
3. 이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경쟁성이 있는가?	경쟁성
4. 이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배제성이 있는가?	배제성
5. 편익을 누리는 개인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대상자구분
6. 해당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법률적, 행정적으로 가능한가?	가능성
7. 사용료의 부과수입이 지방재정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는가?	기여
8. 이 서비스에 대한 요금부과에 있어서 시장정보(원가)가 필요한가?	시장정보

구분	주요내용
공공정책	공공정책이 지녀야할 목표로 적합성, 즉, 세외수입 항목이 공공정책으로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세외수입으로 충당, 그렇지 않다면 시장가격의 원리를 적용해야함
경제적 편익	경제적 편익의 제공여부, 세외수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음
경쟁성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쟁성 여부로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경쟁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배제성	배제가 가능한 재화인 경우라면 요금을 부과, 배제가 불가능하다면 조세 등 다른 재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함
대상자 구분	편익구분의 가능성 여부로서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익을 누리는 피제공자의 구분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요금을 부과하여 충당,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안 강구해야함
가능성	법적근거의 필요성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부과기준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를 통해 요금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임
지방재정 기여	요금부과를 통해 세외수입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지 여부
시장정보	정보의 필요성 여부로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수집 및 이해를 높여야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부담률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임

<응답예시>

세외수입 항목	공공정책	경제적 편익	경쟁성	배제성	대상자 구분	가능성	기여	시장정보
1. 수영장사용료(예시)	○	○	✕	○	✕	✕	○	○

세외수입 당 부과기준에 대한 검토는 주운현(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위의 표에서와 같이 재구성하였으며 이를 참고(바로 위의 기준 표 참고)하여 다음 아래의 세외수입 항목에

서 부과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O, 그렇지 않으면 X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항목	공공 정책	경제적 편익	경쟁성	배제성	대상자 구분	가능성	기여	시장 정보
1.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								
2. 조치원 주차타워(주차장) 사용료								
3. 장애인 콜택시 사용료								
4. 공영자전거 사용료								
5. 전의생활체육공원(축구장) 사용료								

II. 인적사항

DQ1) 귀하의 직업은? ① 교수 ② 실무공무원 ③ 연구원

DQ2) 귀하께서는 관련 분야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개월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